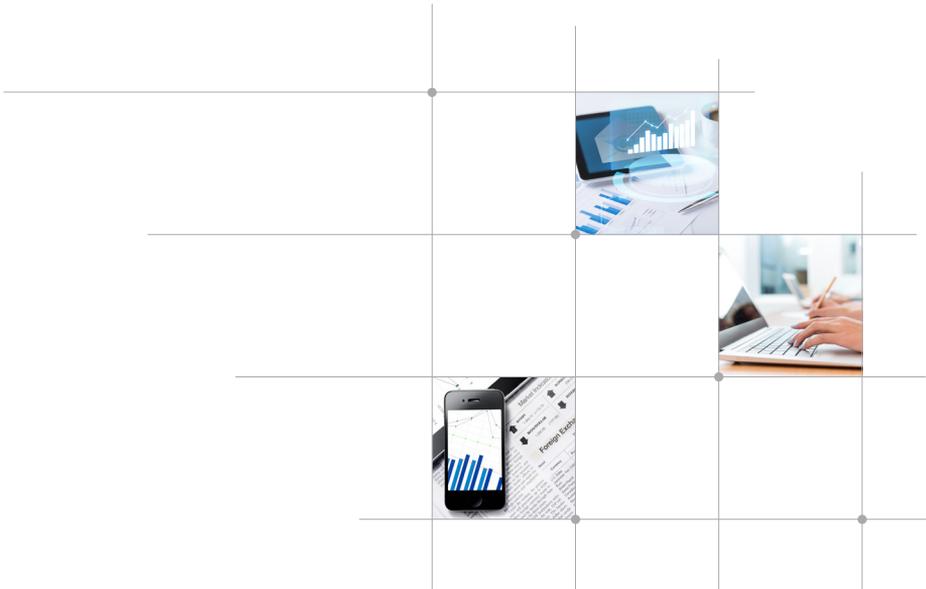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2024. 12.

정재호 · 김한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2024. 12.

정재호 · 김한성

서 언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Cross Border e-Commerce)인 해외직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도 해외직구 거래 건수는 1억 3천만건을 넘어섰고 해외직구 이용자도 1,7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직구가 기존의 기업형 무역과 달리 개인 무역이라는 새로운 무역형태로 자리 잡은 현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관세제도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인 해외직구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해외직구에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그리고 해외직구 과세제도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역내 거대 통상협정 등장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직구와 연관성이 높은 국제물류센터(GDC)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해외직구라는 새로운 무역형태에 걸맞은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도가 높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선임연구위원과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명지대학교 조미진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송영관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심사논평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본 연구원의 이재선 관세사와 원고 교정을 맡아 준 연구출판팀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인 해외직구에 초점을 맞춰, 해외직구가 기존의 기업형 무역과 달리 새로운 무역형태로 자리 잡은 현 상황 속에서 기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해외직구에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그리고 해외직구 과세제도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역내 거대 통상협정 등장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직구와 연관성이 높은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해외직구가 소액 개인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으로 등장하면서 국제무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한 이유로는 과세 면제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제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가 저렴한 이유 중에는 약 절반 정도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수입품과 달리 해외직구 물품에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해외직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국제운송비용이 비싸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액물품은 친지 선물, 혹은 해외여행 물품 등에 한정되었던 당시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친지 선물, 혹은 해외여행 물품 등에 과세하는 것이 정책 목적상 그리고 세수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고 행정비용만 발생한다는 인식에 기본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된 제도였다. 하지만 소액 면세제도가 시작된 당시의 취지와 지금의 해외직구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를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과세 면제제도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균등한 시장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판매자가 국내 생산품 혹은 수입품을 판매하

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국내 판매자가 판매하는 수입 품은 관세도 이미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해외 공급자가 국내 판매자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국내 판매자는 불공평한 시장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해외 공급자와 국내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품질,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등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면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해 해외직구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직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OECD, WCO 등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EU, 중국 등에서는 해외직구에 과세하고 있다. 호주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과세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GST 징수 실적이 예상을 넘었고 다수의 해외 공급자도 자발적으로 등록하였다. 이 결과는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과 호주 국경보호청(Australian Border Force)의 공조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또한 호주 정부의 간소화된 제도 설계, 중국 등 소규모 해외 공급자에 대한 특화된 제도 안내 등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어 우리 과세 당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처럼 소액물품에 과세가 가능해진 것은 모든 자료가 소액이든 거액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디지털로 세관에 전송 가능하기에 과세에 따른 행정비용이 이전보다 작아졌다는 것이다. 디지털화된 통관환경으로 호주에서 보았듯이, 납세협력도 높고, 세수도 예상보다 많으면서 비용 대비 합리적인 제도로 운용할 수 있다.

EU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공평한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2016년 연구에서는 소액면세제도로 인해 해외직구의 약 65%가 저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추산하여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EU는 추가로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도 2028년부터 폐지할 예정

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다. 관세 면세제도로 인해 저가신고 및 분할신고 등을 통한 과세 회피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EU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간소화된 간이세율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간이세율제도는 우리도 현재 운영하는 제도로서, 해외직구에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도 관세에 적용되는 소액면세 한도를 철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물품 중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개인에게 수입요건 확인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관세를 부과해서 요건확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규제 무력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물품의 요건확인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요건확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수입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해외직구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무력화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도 과세면제 및 요건확인 면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수입이 아닌 해외직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직구로 많이 반입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여 요건확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내 사업자와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해외직구 악용 가능성,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등을 고려해서 간이세율이 0%인 품목군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DC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자무역체제를 이끌었던 WTO의 협상력 부재와 주요 기능 상실, 그리고 대표적 무역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존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개도국들이 역내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면서 신통상규범을 확립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역내 거대 통상협정에서는 기존 협정에서 볼 수 없었던 역내 누적 원산지를 인정하면서 역내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과 달리 수입국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해외

직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물류시스템을 통한 배송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시스템과 역내 거대 통상협정의 누적 원산지증명을 활용하여 GDC를 이용한 교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내 GDC를 활용하는 방식은 국경 간 해외직구 거래의 운송비용 및 시간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B2C 거래 방식에 적합한 방안으로 꼽힌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상품 공동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하고 있다. 국내 물류업체들도 해외직구의 운송비용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 등에 GDC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 GDC에서는 과세 문제로 인해 국내 반입은 허용되지 않고 수출만 가능해서 국제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으로 GDC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GDC의 국내 활용 방안은 국내 소비자 입장과 함께 국내 사업자 입장,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GDC를 통해 해외직구를 받게 되면, 운송비 절감에 따른 가격 인하, 배송 시간 단축 등의 효용 증가가 발생한다. 해외직구 물품이 주문 후 개별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앞서 사전에 대량으로 GDC에 반입되어 주문 후 국내로 배송되기 때문에 배송 비용 및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 판매자 그리고 일반 수입업자 입장에서 GDC에서 B2C 거래를 허용하면 더욱더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류산업 입장에서, GDC에 반입된 수입 화물은 운송, 하역, 창고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발생하여 물류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및 사업자 입장과 함께, GDC의 역할은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 등을 포함하여 더 큰 범위에서 논의하여 GDC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 등을 활용할 경우, 양자 간 FTA와 달리 폭넓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해외역직구)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GDC 운용의 중요한 걸림돌은 과세 문제이다. 따라서 GDC는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제도 등을 통한 폭넓은 특혜관세 혜

택을 활용하여, 국내 생산 증가, 물류 처리, 항공 배송 등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외직구에 과세하여 GDC를 제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면서 국내 생산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해외직구 제품도 역시 국내 생산품과 일반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호 경쟁은 국내 사업자의 품질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유도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상호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과세 면제와 요건확인 비용 면제를 시정하여 공평하게 경쟁할 환경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차이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국내 생산자와 판매자도 생산성 및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 차

I. 서론	17
II. 국내 해외직구 관세제도 분석	23
1. 해외 해외직구 시장	23
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23
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24
2. 국내 해외직구 현황	29
가. 해외직구 통관 규모	29
나. 해외직구 통관 방법	31
다. 해외직구와 면세제도	36
라. 해외직구 반입 현황	39
3. 해외직구 물품과 일반 수입품 간 적용제도 차이	46
가.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	47
나. 간소한 통관절차	47
다. 수입요건확인 면제	49
III. 주요국의 해외직구 규제 강화	51
1. 국제사회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과세 논의	51
가. OECD 논의	51
나. 호주의 도입 과정 논의	53
다. EU의 도입 과정 논의	55
2. 호주·EU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58
가. 호주 소액물품에 대한 GST 부과제도	58
나. 호주 소액물품 GST 부과제도에 대한 평가	61

다. EU의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64
라. EU의 소액물품 관세 면제제도 폐지	69
마. EU의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 개정 방향	71
3. 그 외 주요국 제도 특징	72
가. 중국	72
나. 미국	74
다. 뉴질랜드	75
4. 비교 및 시사점	75
IV. 전자상거래 통상환경 변화 분석	78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78
가. 다자무역체제에서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논의	78
나. 디지털협정의 주요 쟁점 사안	82
다. 역내 통상협정의 확산	84
2. 국제물류센터(GDC)를 활용한 해외직구 모델	88
가. 새로운 해외직구 물류 방식 발전	88
나. RCEP과 국제물류센터(GDC) 활성화	89
다. 국내 국제물류센터(GDC) 운용 현황과 한계	92
V. 해외직구 관련 관세제도 발전 방향	95
1. 해외직구 과세제도 개편	95
가. 과세 필요성	95
나. 과세에 따른 납세협력 유도	99
2. 과세 관련 고려 사항	101
가. 과세를 위한 제도 마련	101
나. 연간 한도 설정 및 소액면세한도 축소의 문제점	102

다. 한미 FTA 규정 및 규정 개정 문제	104
라. 과세에 따른 세수 추정	105
마. 소비자와 사업자 후생	106
3.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GDC 발전 방향	107
가. 국제 통상환경 변화	107
나. GDC 활용과 발전 방향	108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11
참고문헌	113
부록	117

표목차

〈표 II-1〉 상위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총 상품가치	26
〈표 II-2〉 알리바바 국제 소매거래 수익	26
〈표 II-3〉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 순매출액	28
〈표 II-4〉 해외직구와 일반수입 금액 비교	30
〈표 II-5〉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규정	31
〈표 II-6〉 특송물품의 통관방법	32
〈표 II-7〉 해외직구 신고방법별 반입 건수 및 비중	34
〈표 II-8〉 해외직구 신고방법별 반입 금액 및 비중	35
〈표 II-9〉 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 반입 건수 및 금액	36
〈표 II-10〉 소액물품 등의 면세	37
〈표 II-11〉 해외직구 물품 면세 건수 및 금액	38
〈표 II-12〉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건수	40
〈표 II-13〉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건수 비중	40
〈표 II-14〉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금액	41
〈표 II-15〉 주요 국가별 평균 해외직구 구매 금액	42
〈표 II-16〉 해외직구 전체 품목별 반입 건수	43
〈표 II-17〉 해외직구 전체 품목별 반입 금액	44
〈표 II-18〉 해외직구 반입 금액과 일반 수입액 비교(2023년)	46
〈표 II-19〉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48
〈표 II-20〉 특송물품 반입 건수 현황	49
〈표 III-1〉 호주의 간소화된 GST 등록과 표준 GST 등록 비교	60
〈표 III-2〉 호주 소액물품에 대한 GST 징수액	62
〈표 III-3〉 해외 공급업체 매출액에 따른 GST 등록 현황	63
〈표 III-4〉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목록	73

〈표 IV-1〉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교: 한·ASEAN FTA vs. RCEP	90
〈표 IV-2〉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규제혁신 주요 내용	93
〈표 IV-3〉 GDC를 통한 해외직구와 일반수입 비교	94
〈표 V-1〉 해외직구 제품과 정식 수입품의 가격 차이	96
〈표 V-2〉 최근 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 단속 현황	99
〈표 V-3〉 한미 FTA 협정 제7.7조(특송화물)	104

그림목차

[그림 II-1]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규모	23
[그림 II-2]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24
[그림 II-3]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총 상품가치	25
[그림 II-4] 아마존 공급망	28
[그림 II-5] 해외직구와 일반수입 건수	29
[그림 II-6] 특송물품의 수입개관	32
[그림 II-7] 해외직구 신고방법별 반입 건수 비중	34
[그림 II-8] 해외직구 신고방법별 반입 금액 비중	35
[그림 II-9] 해외직구 면세 건수 및 금액 비중	38
[그림 II-10]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건수	40
[그림 II-11]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금액	41
[그림 II-12] 해외직구 주요 품목별 건수 추이	43
[그림 II-13] 해외직구 주요 품목별 금액 추이	44
[그림 III-1] 호주의 소액물품에 대한 GST 징수	61
[그림 IV-1] 미·중 관세전쟁	80
[그림 IV-2]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84
[그림 IV-3] RCEP의 역내 생산시장 단일화	86
[그림 IV-4] 역내 운송거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91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해외 물품을 직접 주문해서 자국으로 배송받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 확산은 상품의 국경 간 흐름을 포함하여 국제무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전 세계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9년 약 5,786억달러에서 2026년 약 2조 2,486억달러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역시 개인들의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해외직구 거래 건수는 1억 3천만건을 넘어섰다. 2013년에 1천만건을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10배가 증가하였다. 해외직구 거래 금액도 약 52.9억달러(약 6.9조원)로 증가하였고, 해외직구 이용자도 1,700만명 정도로 다수의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국가 간 전자상거래인 해외직구에 초점을 맞춰,¹⁾ 해외직구가 기존의 기업형 무역과 달리 새로운 무역형태로 자리 잡은 현 상황 속에서 기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해외직구에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그리고 해외직구 과세제도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역내 거대 통상협정 등장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직구와 연관성이 높은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직구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급증하였는데, 저렴한 가격의 바탕

1) 전자상거래는 국내에서 혹은 국가 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관세제도와 큰 연관성이 없지만, 국가 간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인 일명 해외직구는 통관 등 관세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전자상거래는 국가 간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한정해서 논의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외직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에는 과세 면제제도도 큰 영향을 미쳤다.²⁾ 기본적으로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내국세가 과세 혹은 면세되고, 수입허가, 승인 등의 요건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모든 수입품이 이런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해외직구는 그렇지 않다. 해외직구는 수입신고가 생략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수입허가, 승인 등의 요건확인 절차도 생략되고 있다. ‘왜 해외직구는 동일한 수입품에 적용되는 과세 등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인들의 해외직구가 막 시작되었을 때 해외직구에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제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 중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통관절차 간소화(수입신고 생략) 및 요건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해외직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국가 간 국제운송비용이 비싸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액물품은 친지 선물, 혹은 해외여행 물품 등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친지 선물, 혹은 해외여행 물품 등에 과세하는 것이 정책 목적상 그리고 세수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고 행정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으로 자가사용 소액면세제도를 적용하였다.³⁾ 하지만 소액면세제도가 시작된 당시와 지금의 해외직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된 관세제도는 충분히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소액면세제도가 여전히 해외직구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2) 한국소비자원(2016), p. 31 <표 4-1>과 한국소비자원(2018), p. 23 <표 3-1>에 의하면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설문 중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한 응답으로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78.1~80.9%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3) 세계관세기구(WCO) 개정교토협약에 의해 소액면세 기준을 국가별로 설정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면세제도로 인해 추가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상품의 국경 간 흐름을 포함하여 국제 무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도 하였지만,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제도로 인해 국내 판매자와 생산자 등을 포함한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공평한 시장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 면세제도로 인해 전체 해외직구 물품의 약 98%인 1억 2,900만건의 해외직구가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 판매자가 국내 생산품 혹은 수입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국내 판매자가 판매하는 수입품은 관세도 이미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해외 공급자가 국내 판매자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국내 판매자는 불공평한 시장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소비자가 선풍기를 국내 판매자에게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지만, 동일한 수입 선풍기 혹은 국내 선풍기와 유사한 선풍기를 해외 공급자로부터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느냐에 따라 과·면세가 달라지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선풍기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이든 국산품이든 상관없이 국내법 규정에 따라 다양한 허가, 승인, 인증 등이 필요하다.⁴⁾ 하지만 개인의 자가사용 해외직구에 한해서는 수입 요건확인이 면제된다. 이는 해외직구는 기존의 여행자 휴대품 또는 친지 선물 등과 유사하다고 보고, 개인이 국내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등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물품의 요건확인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요건확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수입이 아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요건확인 면제되는 해외직구로 전환되면서 규제

4) 예를 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가 무력화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해외 사업자들도 과세면제 및 요건확인 면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수입이 아닌 해외직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직구로 많이 반입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규제 회피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억제해야 하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제도도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글로벌 배송에서 효율적인 물류 활용을 위해 국제물류센터(GDC)가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국 내에서 소포장 후 배송하는 방식에서 해외 물류센터로 대량 반입 후 현지 소포장 배송을 통해 물류비용 및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부응해서 GDC를 유치해서 운용 중이지만, 현재는 해외 수출만 허용하고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적용되는 면세제도 등으로 인해 국내반입(B2C)⁵⁾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GDC로 대량 반입 후 소포장 배송을 할 경우에는 면세 및 요건확인 면제가 적용되지만, 대량 반입된 상태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면 과세 및 요건확인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관방식에 따라 과·면세와 요건확인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물류 흐름상 GDC 활용은 필요하지만, GDC에서 작은 부분인 해외직구의 면세문제로 인해 본질적인 GDC의 핵심 역할은 기대하지 못하면서, 해외 공급자, 수입업자, 국내 판매자, 국내 생산자 간의 형평성 문제, 부가가치 창출이 묶여 있는 물류업, 그리고 소비자 후생 등 다양한 문제가 서로 얽힌 상황에 부닥쳐 있다.

국제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국가 간 개인들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과세 형평성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도 찾기 어렵다. 기존에 일부 전자상거래 관련 세부적인 관세법 적용 문제를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정재호·김한성(2019)에서는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방안을 분석하여 국내

5) B2B 방식의 국내반입은 허용되고 있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⁶⁾ 김상만(2022)에서는 관세 등 부과처분, 밀수입죄,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서 쟁점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⁷⁾ 조원길(2022)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간이우편통관시 사전통관정보 제출 의무화, 구매대행업체의 등록제 마련, 특송업체의 범규준수도 적용 강화, 연간 면세한도 설정, 우편과 특송의 간이신고 기준 일원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⁸⁾ 그리고 김충호(2017)에서는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특송물품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신고 항목 추가, 반품 물품 관리 등 특송물품 부정통관 방지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⁹⁾ 김숙경(2022)에서는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분석하였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생긴 소비자 잉여를 2021년에 약 5,363억원으로 추정하였다.¹⁰⁾ 이 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고객특성, 마케팅, 재구매, 이용행태, 해외 역직구(중국 소비자 재구매 등) 등 경영학적인 선행연구들은 다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소비보호원에서 조사하는 해외직구 실태조사, 소비자 피해조사 등이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대두된 소액면세제도 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와 수입요건확인 면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런 문제에 대한 주요국들의 제도 변경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과세 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통상 환경과 연계하여 GDC의 역할을 새롭게 분석함으로써 GDC의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
- 6) 정재호·김한성,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7) 김상만, 「관세법상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관련 최근 판결의 주요 쟁점 분석」,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23권 제3호, 2022, pp. 3~18.
- 8) 조원길, 「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23권 제3호, 2022, pp. 83~104.
- 9) 김충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8권 제1호, 2017, pp. 3~17.
- 10) 김숙경,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분석」,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년 11월호, 산업연구원, 2022, pp. 55~65.

본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해외직구 관련 관세제도를 분석한다. 전 세계 해외직구 시장에 대한 현황을 소개한 후 국내 해외직구 통관제도 및 면세제도를 살펴보고, 해외직구 통관 규모를 분석한다. 한편 해외직구 물품과 수입품 간의 관세제도 차이를 분석한다. 신고제도, 과세여부, 수입요건확인 여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 강화,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에 집중해서 제도 도입 배경 및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한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호주와 EU의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그 밖의 중국과 미국의 해외직구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이 국가들의 제도 운용을 통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전자상거래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WTO 다자무역체제 기능 약화 및 이에 따른 역내 통상협정 확산에 의한 신 통상규범 등장에 대해 살펴본다. 해외직구 확산에 따른 물류 방식 진화, 역내 통상협정을 활용한 GDC의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된 국내 GDC 운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Ⅴ장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해외직구 과세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직구 과세를 위한 사전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한다. 그리고 해외직구 확산에 따른 새로운 물류 방식 및 역내 통상협정을 활용한 GDC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II. 국내 해외직구 관세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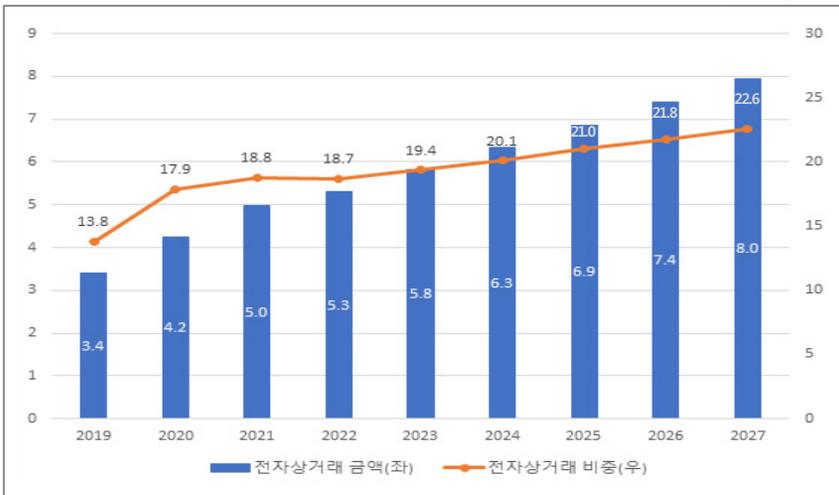
1. 해외 해외직구 시장

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eMarketer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규모는 2019년 약 3.4조달러에서 2023년에는 약 5.8조달러로 성장하였고, 2027년에는 약 8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체 소매시장의 약 19.8%를 차지하였으며, 2027년에는 약 22.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II-1]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규모

(단위: 조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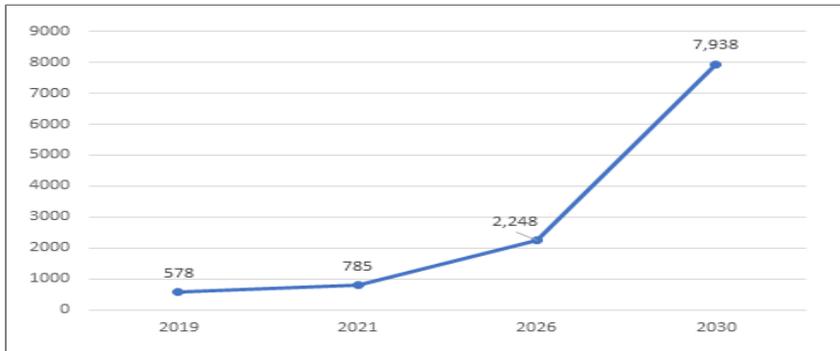


자료: eMarketer, <https://www.emarketer.com/chart/265660/retail-e-commerce-sales-worldwide-2021-027-trillions-change-of-total-retail-sales>, 검색일자: 2024. 6. 13.; 고비즈코리아, 「숫자로 읽는 2024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2024 Gobiz Global E-commerce Trend 웹진 GET』, Vol. 4, 2024, p. 9, <https://kr.gobizkorea.com/get/2024/02/>, 검색일자: 2024. 6. 13.

이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소매시장은, [그림 II-2]에 의하면 2021년 약 7,850억달러 규모였으나 2026년에는 약 2조 2,486억달러, 2030년에는 약 7조 9,38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6.9%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II-2]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단위: 십억달러)



자료: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6796/global-cross-border-e-commerce-market-value/>,
검색일자: 2024. 6. 19.

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환경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의사소통과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¹¹⁾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잠재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UNCTAD에 의하면 디지털 중개 플랫폼¹²⁾의 연간 총 상품가치(Gross Merchandise Value)는¹³⁾ 2019년 약 2.6조달러에서 2021년 약 4조달러로 55%

11) UNCTAD, *Business e-commerce sales and the role of online platforms*, 2024, p. 31.

12)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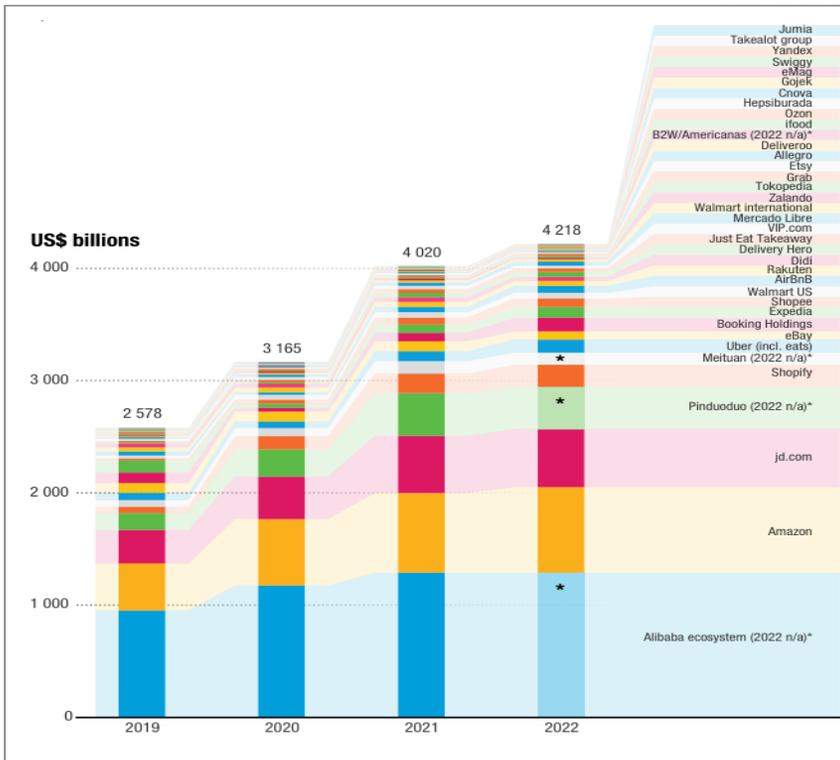
13)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금전적 가치로 플랫폼이 중개

가량 증가하였다.¹⁴⁾ 2022년에는 이러한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여 약 4.2조 달러의 상품가치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총 상품가치가 가장 큰 업체는 알리바바로 2022년에 약 1.3조달러의 상품이 거래되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JD.com, 핀둬두오 등이며, 총 상품가치 상위 7개 기업은 중국과 미국 기업이 각 3개씩, 일본 기업이 1개이다.

[그림 II-3]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총 상품가치

(단위: 십억달러)



자료: UNCTAD(2024), p. 32.

하는 판매로 얻은 요금이나 수수료만을 반영한 수입(income)과는 다른 개념이다(UNCTAD, 2024, p. 33).

14) UNCTAD(2024), p. 31.

〈표 II-1〉 상위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¹⁾ 총 상품가치

(단위: 십억달러)

순위	플랫폼	주재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	알리바바	중국	954	1,145	1,200	1,312
2	아마존	미국	417	575	709.7	760.6
3	JD.com	중국	302	379	478.3	505.1
4	핀둬둬	중국	146	242	378	450
5	이베이	미국	86	100	87.6	73.9
6	월마트	미국	37	64	64.9	73.2
7	라쿠텐	일본	34	42	45.5	42.6

주: 1) 디지털 중개 플랫폼 중 업종이 전자상거래로 구분된 업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통상 통계 참고 자료집』, 2023, p. 41; UNCTAD(2024), pp. 46~50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트랜디올, 라자다, 다라즈 등의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여 2023년 약 73억달러의 국제 소매거래 수익¹⁵⁾을 달성하였다. 2023년 국제 소매거래 수익은 전년의 약 6.7억달러보다 약 17% 증가하였다.

〈표 II-2〉 알리바바 국제 소매거래 수익

(단위: 십억위안, 십억달러, %)

	2021년	2022년	2023년
위안화	34.5	42.7	49.9
달러	5.3	6.7	7.3
증감율	42%	24%	17%

자료: Alibaba, FY 2021 Annual Report, 2021, p. 118; Alibaba, FY 2022 Annual Report, 2022, p. 137; Alibaba(2023), p. 118.

알리바바의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의 하나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 및 전 세계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

15) 주로 알리익스프레스, 트랜디올, 라자다에서 발생하며, 물류 서비스, 고객 관리 서비스 및 상품 판매 수익을 포함한다(Alibaba, FY 2023 Annual Report, 2023, p. 323).

도록 구축하고 있다.¹⁶⁾ 알리익스프레스의 모바일 앱, 웹 사이트는 영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초이스 서비스로 일부 국가의 소비자에게 무료 배송 및 반품, 배송품질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이나오와의 협력으로 배송시간을 절약하고 있다.¹⁷⁾ 2023년 출시된 초이스 서비스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엄선된 우수한 가치의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2013년에 설립된 알리바바의 물류서비스 기업인 차이나오는 2014년부터 알리익스프레스를 지원하여 5일 배송, 10일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⁸⁾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주문 수가 2023년에는 약 30%, 2024년에는 2배가량 증가하였다.¹⁹⁾ 알리바바의 2024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3년간 11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고 18만㎡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²⁰⁾

2) 아마존

아마존의 2023년 온라인 스토어 순매출액은²¹⁾ 약 2,319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9%가 증가하였다. 온라인 스토어 순매출액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감소하였지만, 2023년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16) Alibaba, *FY 2024 Annual Report*, 2024, p. 31.

17) Alibaba(2023), p. 38; Alibaba(2024), p. 31.

18) Cainiao, <https://www.cainiao.com/en/global-express.html?spm=a2d524.28499003.header.6.8cbb9afeql6T8l>, 검색일자: 2024. 6. 21.

19) Alibaba(2023), p. 38; Alibaba(2024), p. 31.

20) 전성훈, 「알리바바, 한국에 3년간 1조 5천억원 투자...연내 물류센터 건립」, 『연합뉴스』, 2024. 3. 14.,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3163300030>, 검색일자: 2024. 6. 21.

21) 총수익으로 기록되는 제품 판매 및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다(Amazon, *Quarterly results 2023 Q4 Earnings*, 2024, p. 16).

〈표 II-3〉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 순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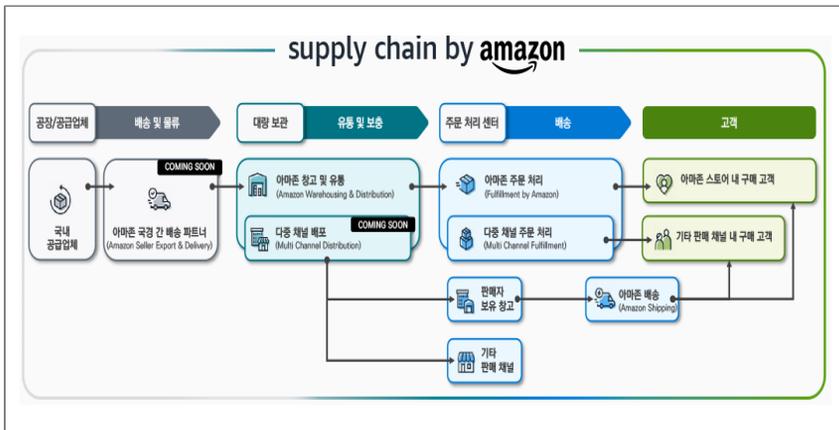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

	2021년	2022년	2023년
순매출액(Net Sales)	222.1	220.0	231.9
증감율	-1%	-2%	9%

자료: Amazon, *Quarterly results 2021 Q4 Earnings*, 2022, p. 17; Amazon, *Quarterly results 2022 Q4 Earnings*, 2023, p. 14; Amazon(2024), p. 16.

아마존은 아마존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 채널로의 상품 공급 과정 전반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인 아마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²²⁾ 아마존 공급망을 구성하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는 재고 배치 최적화, 재고 자동 보충, 재고 발송 및 보관 비용 절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4] 아마존 공급망



자료: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https://sell.amazon.co.kr/grow/fulfillment-by-amazon>, 검색일자: 2024. 6. 21.

22)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https://sell.amazon.co.kr/grow/fulfillment-by-amazon>, 검색 일자: 2024. 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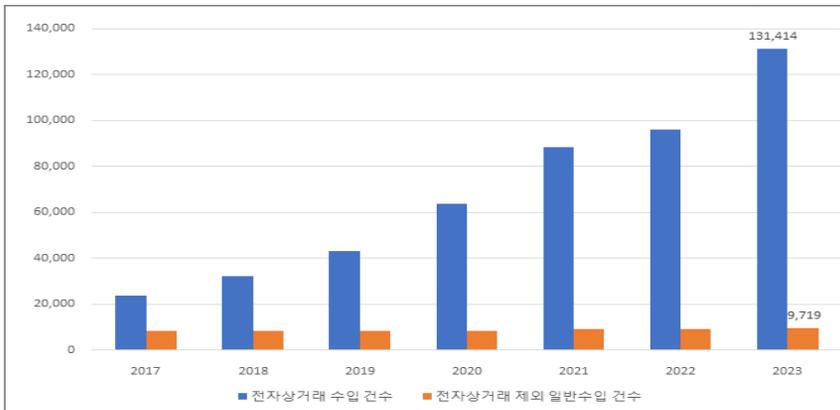
2. 국내 해외직구 현황

가. 해외직구 통관 규모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2017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400만 건에서 2020년에는 6천만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약 1억 3천만건에 이르렀다. 2010년에 약 359만건이었던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감안할 때 2023년에 약 36.5배 증가하였고,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6배 증가하였다. 참고로 해외직구를 제외한 일반수입은 2010년 약 661만건에서 2023년 약 972만건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직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II-5] 해외직구와 일반수입 건수

(단위: 천건)



주: 전자상거래 수입건수 = 목록통관 건수 + 일반수입신고 중 거래구분 전자상거래 코드신고 건수
전자상거래 제외 일반수입 건수 = 일반수입신고 건수 - 일반수입신고 중 거래구분 전자상거래 코드 신고 건수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5;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TRASS, <https://www.bandtrass.or.kr/theme/ecommerce.do?command=THE005View&viewCode=THE00501>, 검색일자: 2024. 5. 16.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목록통관 + 전자상거래 코드 일반수입) 금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17년에 21.2억달러에서 2023년에는 52.9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수입액(일반수입 + 목록통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2023년 전체 수입액은 약 6,400억원인데, 해외직구는 이 중 약 0.8%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수입은 원유 등 해외직구와 관련 없는 수입품이 대부분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수입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가전제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제품(제84류, 제85류)의 일반 수입액이 약 150조~200조원으로 개인들의 해외직구와는 규모를 비교할 수 없다.

〈표 II-4〉 해외직구와 일반수입 금액 비교

(단위: 백만달러)

연도	전자상거래 ¹⁾	일반수입(전자상거래 제외) ²⁾
2017	2,123	477,243
2018	2,767	533,614
2019	3,152	501,483
2020	3,759	465,449
2021	4,664	612,405
2022	4,735	728,750
2023	5,291	640,023

주: 1) 전자상거래 금액 = 목록통관 금액 + 일반수입신고 중 거래구분 전자상거래 코드 신고 금액

2) 전자상거래 제외 일반수입 금액 = 일반수입신고 금액 - 일반수입신고 중 거래구분 전자상거래 코드 신고 금액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5;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TRASS, <https://www.bandtrass.or.kr/theme/ecommerce.do?command=THE005View&viewCode=THE00501>
검색일자: 2024. 5. 16.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직구 총액이 일반 수입액에 비해 미미하더라도, 특정 품목군에서는 해외직구로 인해 국내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해외직구 관련 통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군의 해외직구액과 일반 수입액을 비교해보면, 후술하겠지만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품목군의 해외직구액과 일반 수입액을 비교했을 때와는 달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품목군에서는 해외직구로 인해 국내 소매업자 등의 국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

나. 해외직구 통관 방법

1)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 규정

「관세법」에서 명시된 해외직구 관련 규정은 매우 간단하게 언급된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가 유일하다. 제254조에서는 관세청장이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도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열거하고만 있다.

〈표 II-5〉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규정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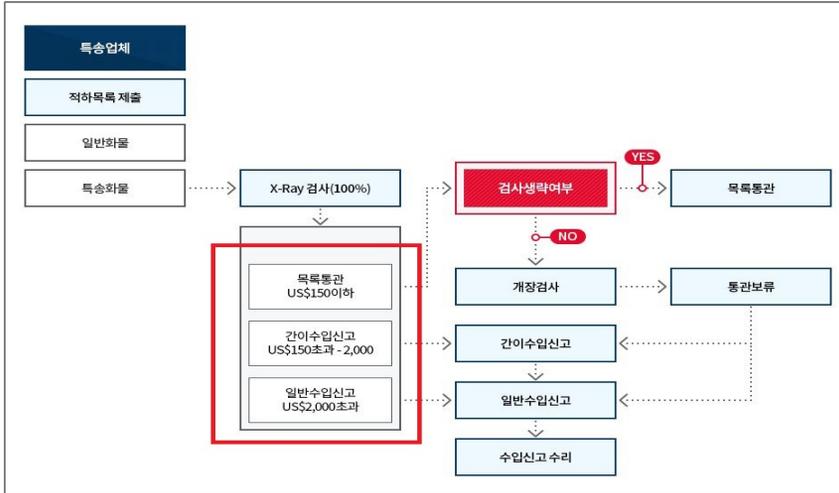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관세법」 제254조,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2) 통관 방식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들에 근거해서 관세청장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방식으로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6] 특송물품의 수입개관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rnts/cntrntsView.do?mi=2821&cntrntsid=819>, 검색일자: 2023. 6. 9.

〈표 II-6〉 특송물품의 통관방법

제8조(신고구분)

-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가) 목록통관

국내 거주하는 수취자가 자가사용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는 의약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를 초과하고, 2천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간이수입신고에서도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인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은 일반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수입신고는 신고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직구에서 간이수입신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다) 일반수입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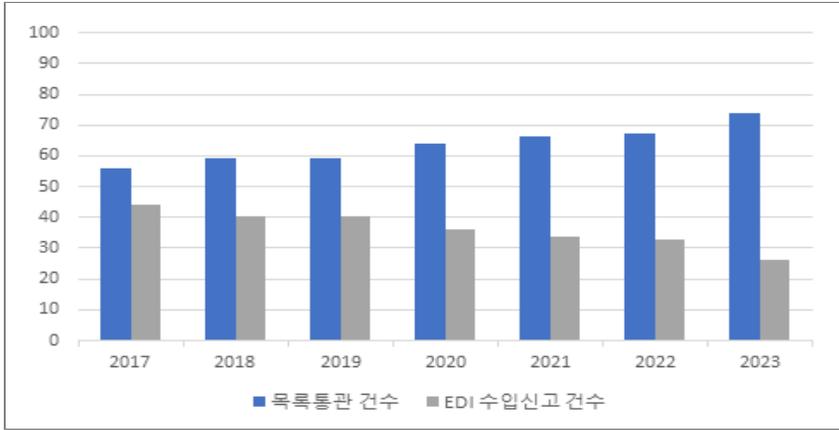
물품가격이 미화 2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등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은 일반 수입물품들과 동일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3) 해외직구 신고방식별 통관현황

해외직구 물품의 반입 건수를 보면, 목록통관이 월등히 많다. 2023년 기준으로 해외직구 물품 중에서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경우가 약 73.7%이고, EDI(전자 데이터 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수입신고(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로 수입된 경우가 약 26.3%이다. 목록통관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7] 해외직구 신고방법별 반입 건수 비중

(단위: %)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표 11-7> 해외직구 신고방법별 반입 건수 및 비중

(단위: 천건, %)

연도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7	13,217	56.0	10,375	44.0	23,592
2018	19,158	59.4	13,097	40.6	32,255
2019	25,549	59.4	17,439	40.6	42,988
2020	40,722	64.1	22,853	35.9	63,575
2021	58,553	66.3	29,827	33.7	88,380
2022	64,500	67.1	31,620	32.9	96,120
2023	96,929	73.7	34,514	26.3	131,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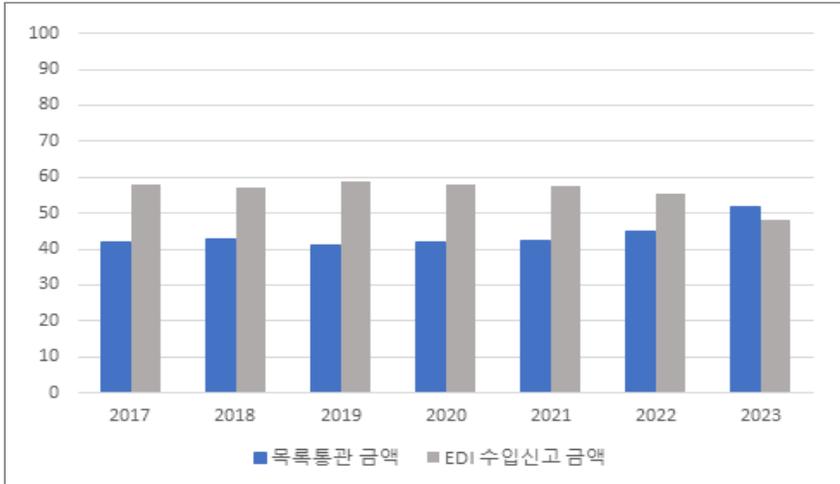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해외직구 물품의 반입 건수가 아닌 반입 금액을 보면, 일반적으로 EDI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된 해외직구 금액이 목록통관을 이용한 경우보다 약간 더 많다. 수입신고 반입 건수가 목록통관에 비해 작지만,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의 소액이지만 EDI 수입신고는 그 이상인 해외직구 물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목록통관을 이용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2023년에 목록통관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금액 비중은 약 52.0%로 EDI 수입신고 비중인 약 48.0%보다 더 많았다. 2023년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II-8] 해외직구 신고방법별 반입 금액 비중

(단위: %)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표 II-8> 해외직구 신고방법별 반입 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7	887	42.0	1,223	58.0	2,110
2018	1,179	42.8	1,576	57.2	2,755
2019	1,292	41.1	1,851	58.9	3,143
2020	1,575	42.0	2,179	58.0	3,754
2021	1,975	42.4	2,683	57.6	4,658
2022	2,115	44.8	2,609	55.2	4,724
2023	2,742	52.0	2,536	48.0	5,278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4) 우편물 통관방법

일부 해외직구 물품은 국제우편물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되기도 한다.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우편물검사를 통해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면세대상은 곧장 우편물 교부 및 배달이 이루어지지만, 과세대상은 세금 납부 등의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친 이후에 우편물 교부 및 배달이 이루어진다.

해외직구 건수가 1억건을 넘었지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약 3천~4천건으로 매우 작고 큰 변화도 없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해외직구가 통계처럼 미미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물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구분이 쉽지 않은 한계로 인해 나타난 문제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11-9〉 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 반입 건수 및 금액

(단위: 천건, 백만달러, %)

연도	우편물(A)		해외직구(B)		우편물 대비 해외직구 비율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46	123	3	4	6.5	3.3
2018	40	123	3	4	7.5	3.3
2019	37	138	3	3	8.1	2.2
2020	29	115	2	3	6.9	2.6
2021	32	90	3	5	9.4	5.6
2022	39	116	4	5	10.3	4.3
2023	40	110	3	4	7.5	3.6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다. 해외직구와 면세제도

1) 소액물품 면세제도

전 세계적으로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이 자국의 관세선을 넘으면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를 비롯한 다양한 내국세가 과세되어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통관제도에서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내국세를 면제하는 국가들이 많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또는 친지들의 선물 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선물이나 개인사용 물품 등 비상업용 물품까지 과세할 이유도 없었으며, 비싼 국제운송비용 등으로 해외로부터의 반입되는 소액물품 규모가 작아서 통관 행정비용에 비해 세수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별 국가별로 과세 적용의 하한선(de minimis threshold)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국가가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기준은 150달러 이하 혹은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고 있다.

〈표 II-10〉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건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정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료: 「관세법」 제9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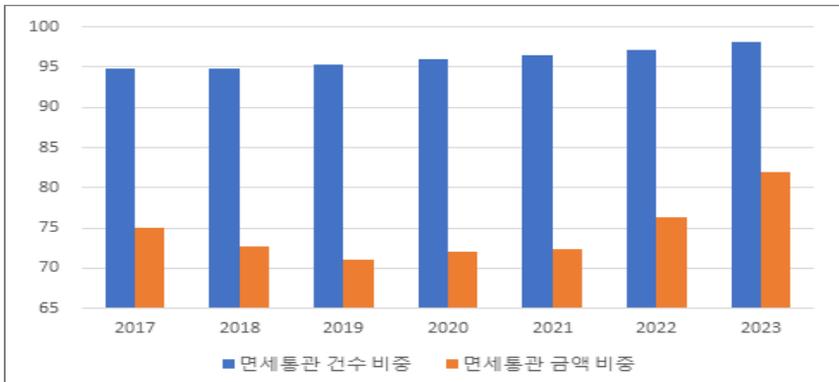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구가 등장하면서 일반적 수입형태인 기업형 대규모 수입품에 적용되던 통관제도를 해외직구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국가가 기존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제도 취지는 지금처럼 해외직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정해진 제도인데, 이제는 대부분이 해외직구 물품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현황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인해 해외직구 물품은 대부분 면세로 반입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약 1억 2,900만건이 면세로 통관되어,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약 98.1%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약 1.9%만 과세되었다. 소비자 대부분은 자가사용 소액면세 한도 내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면세 통관되는 해외직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근래 들어 저가 물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2023년 면세되는 해외직구 금액은 전체 해외직구 금액의 약 81.9%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낮다. 이는 과세되는 해외직구는 소액면세 한도 이상의 품목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II-9] 해외직구 면세 건수 및 금액 비중

(단위: %)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표 II-11> 해외직구 물품 면세 건수 및 금액

(단위: 천건, 백만달러, %)

연도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2017	22,367	94.8	1,582	75.0
2018	30,589	94.8	2,004	72.8
2019	41,006	95.4	2,231	71.0

〈표 II-11〉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

연도	건수		금액	
		비중		비중
2020	61,011	96.0	2,706	72.1
2021	85,283	96.5	3,374	72.4
2022	93,402	97.2	3,602	76.2
2023	128,898	98.1	4,324	81.9

주: [그림 II-5]의 전자상거래 건수는 e-나라지표의 목록통관 건수와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의 전자상거래 코드 신고 일반수입 건수의 합으로 e-나라지표의 목록통관 건수와 EDI 수입 건수의 합인 해당 합계 건수와 상이함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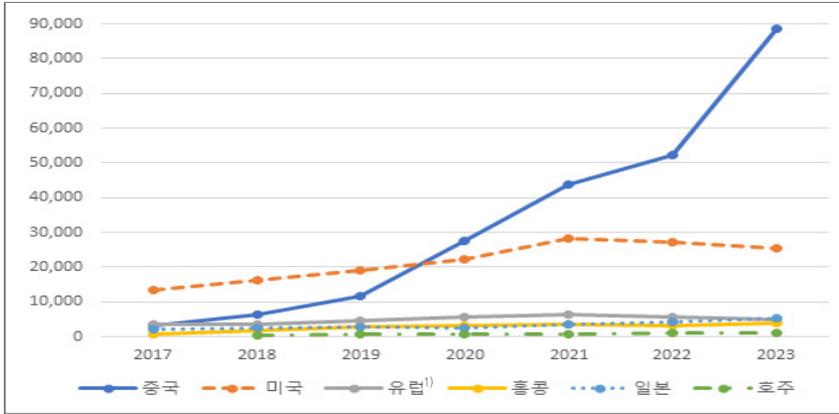
라. 해외직구 반입 현황

1) 국가별 해외직구 반입 현황

국가별 해외직구 현황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가 가장 많다.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약 67.6%가 중국의 해외직구이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는데, 2020년부터 해외직구 건수 기준으로 그리고 2023년부터는 금액 기준으로도 중국의 해외직구 규모가 미국을 초과하였다. 중국에서 반입되는 해외직구는 2017년 약 323만건에서 2023년에는 약 8,881만건으로 증가하였고, 해외직구 반입 금액도 2017년 약 1.9억달러에서 2023년에는 약 23.6억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II-10]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건수

(단위: 천건)



주: 1)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합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표 II-12>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건수

(단위: 천건)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국	3,229	6,480	11,605	27,483	43,954	52,154	88,815
미국	13,302	16,246	19,148	22,174	28,291	27,314	25,361
유럽 ¹⁾	3,399	3,651	4,740	5,677	6,208	5,765	4,806
홍콩	858	1,935	2,918	3,215	3,399	3,263	3,989
일본	2,015	2,594	2,718	2,668	3,509	4,386	5,247
호주	-	288	608	769	877	990	1,069

주: 1)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합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표 II-13>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건수 비중

(단위: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국	13.7	20.1	27.0	43.2	49.7	54.3	67.6
미국	56.4	50.4	44.5	34.9	32.0	28.4	19.3
유럽 ¹⁾	14.4	11.3	11.0	8.9	7.0	6.0	3.7
홍콩	3.6	6.0	6.8	5.1	3.8	3.4	3.0

〈표 II-13〉의 계속

(단위: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본	8.5	8.0	6.3	4.2	4.0	4.6	4.0
호주	-	0.9	1.4	1.2	1.0	1.0	0.8

주: 1)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합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그림 II-11]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금액

(단위: 백만달러)



주: 1)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합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표 II-14〉 해외직구 주요 국가별 반입 금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국	191	310	403	705	1,073	1,487	2,359
미국	1,215	1,472	1,534	1,603	1,861	1,586	1,453
유럽 ¹⁾	387	482	628	761	808	689	515
홍콩	81	155	185	210	227	224	234
일본	137	172	180	198	289	331	364
호주	-	23	42	57	66	63	65

주: 1)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합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2023년 기준으로 국가별 평균 해외직구 구매 금액(해외직구 건당 금액)을 비교해 보면, 유럽에서 반입되는 평균 해외직구 구매 금액이 110~130달러 수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가격 변동 폭도 크지 않다. 유럽에서 반입되는 해외직구 품목이 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일본과 호주로부터 반입되는 평균 해외직구 구매 금액도 60~70달러 수준이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평균 해외직구 구매 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에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평균 해외직구 구매 금액은 약 91.3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57.3달러로 낮아졌다. 중국의 경우에는 2017년에 59.3달러에서 2023년에는 26.6달러로 낮아졌다. 아마도 해외직구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하고 국내 소비자도 가격경쟁력 위주로 해외직구를 구매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평균 해외직구 구매 금액이 약 40달러이기에 중국에서 저가의 해외직구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5〉 주요 국가별 평균 해외직구 구매 금액

(단위: 달러)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국	59.3	47.9	34.7	25.7	24.4	28.5	26.6
미국	91.3	90.6	80.1	72.3	65.8	58.1	57.3
유럽 ¹⁾	113.8	132.1	132.5	134.1	130.1	119.5	107.2
홍콩	94.6	80.0	63.3	65.2	66.8	68.8	58.6
일본	67.9	66.4	66.1	74.4	82.3	75.5	69.3
호주	-	78.9	69.1	74.2	75.4	63.9	60.8

주: 1)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합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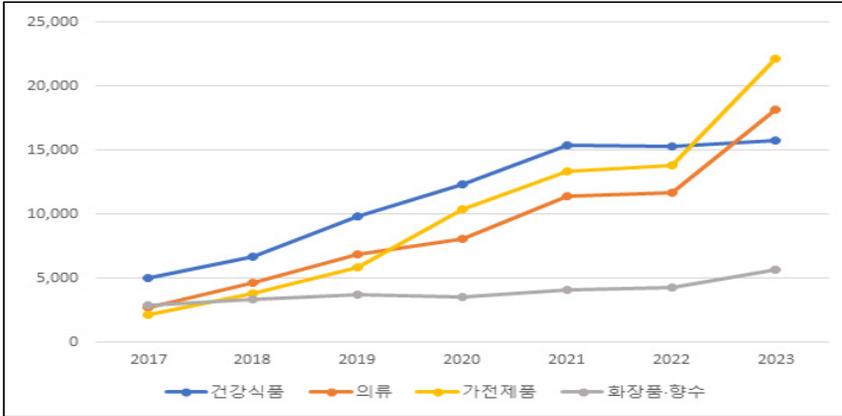
2) 품목별 해외직구 반입 현황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반입되는 품목은 건수를 기준으로 2017년 이후 줄곧 건강식품이었으나 2023년에는 가전제품이 1위를 차지하였다. 근래 들어 건강식품의 증가 추세는 주춤하지만, 가전제품과 의류의 증가 추세가 가파

르다. 2023년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반입된 품목은 가전제품, 의류, 건강식품, 신발, 기타 식품의 순서이다.

[그림 II-12] 해외직구 주요 품목별 건수 추이

(단위: 천건)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표 II-16> 해외직구 전체 품목별 반입 건수

(단위: 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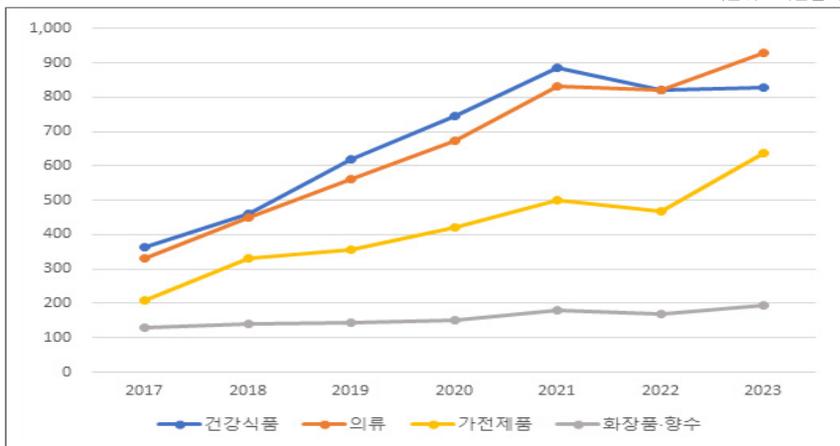
품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식품	4,974	6,638	9,840	12,348	15,379	15,295	15,778
의류	2,722	4,651	6,847	8,080	11,378	11,695	18,186
가전제품	2,112	3,776	5,840	10,341	13,323	13,852	22,170
기타식품	2,821	3,329	3,908	5,347	11,306	7,531	7,143
화장품·향수	2,867	3,310	3,731	3,499	4,066	4,293	5,613
신발류	1,648	2,050	2,612	2,960	4,324	6,058	8,493
완구인형	1,212	1,652	1,734	2,677	139	4,553	6,647
핸드백·가방	825	1,088	1,539	2,129	2,705	3,491	6,264
서적류	186	262	264	376	538	563	762
시계	159	180	216	317	442	912	1,197
기타	4,066	5,303	6,456	15,503	24,780	27,877	39,191
합계	23,592	32,239	42,989	63,575	88,380	96,120	131,443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해외직구 금액 기준으로 의류의 반입 금액이 2023년에 가장 많다. 건강식품은 2017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였지만, 2023년에는 의류가 추월하여 해외직구 품목 중 가장 많은 금액이 반입되었다.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반입된 가전제품은 금액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많이 반입되었다. 중국에서 저가의 가전제품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면서 건수에 비해 금액의 증가 추세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3] 해외직구 주요 품목별 금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표 II-17> 해외직구 전체 품목별 반입 금액

(단위: 백만달러)

품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식품	364.8	461.2	617.7	746.4	884.2	821.6	829.0
의류	330.3	448.5	562.1	672.3	832.6	821.8	928.0
가전제품	207.6	332.8	355.5	422.0	499.2	466.5	638.2
기타식품	134.5	155.7	177.1	222.5	442.8	303.0	291.7
화장품·향수	130.2	140.8	145.2	152.6	178.8	170.6	194.8
신발류	169.1	228.9	262.6	266.4	344.1	401.9	478.7
완구인형	87.4	105.5	109.9	130.8	35.6	179.6	225.1
핸드백·가방	137.1	185.7	247.7	310.6	315.7	289.6	304.0

〈표 II-17〉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품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적류	13.2	16.3	16.2	20.3	27.2	23.2	26.0
시계	23.0	22.8	20.8	24.6	30.3	31.3	34.0
기타	513.3	656.9	628.7	785.2	1,068.0	1,215.4	1329.0
합계	2,110.2	2,754.9	3,143.2	3,753.8	4,658.4	4,724.7	5278.4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3) 품목별 해외직구 반입액과 일반 수입액 비교

해외직구로 반입액이 큰 품목은 건강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이다. 이런 해외직구 반입액이 일반 수입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해외직구 관련 통관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수입코드와 연계된 해외직구 관련 통관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품목별 해외직구 반입액과 HS 2단위 기준의 일반 수입액을 사용하여 해외직구 규모와 일반 수입액 규모를 어렵잡아 비교해 보려고 한다.

해외직구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일반 수입액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액은 약 8.3억달러이고, 이 건강기능식품이 속하는 HS 제21류의 전체 수입액은 약 29억달러로 약 28.6%를 차지하고 있다. 제21류에는 커피 농축액, 차, 소스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수입 대비 약 3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해외직구 액수를 전체 수입액에서 전체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했지만, 특정 품목군에서는 해외직구로 인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2년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국내 판매액은 약 3.9조원²³⁾

23)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5&tblId=DT_145010_009&vw_cd=MT_ZTITLE&list_id=F_9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자: 2024. 10. 2.

이고, 같은 해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액은 약 8.2억달러(약 1조원, 환율 1,305원)로 국내 판매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의류, 신발류, 화장품·향수, 핸드백·가방, 완구, 운동용품, 서적 등은 일반 수입과 비교할 때 10% 가까운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근래 들어 급증하는 전자제품은 일반 수입을 통해 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제품이 수입되기 때문에, 개인 자가사용에 한정된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일반 수입액과 비교해 보면, 해외직구 비중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표 II-18〉 해외직구 반입 금액과 일반 수입액 비교(2023년)

(단위: 백만달러, %)

류	주요품목	해외직구 반입액	일반 수입액	비중
제61류, 제62류, 제64류, 제65류	의류, 신발류	1,406.7	16,194.9	8.7
제21류	건강식품	829.0	2,902.5	28.6
제84류, 제85류	가전제품	638.2	182,551.0	0.3
제17류~제20류, 제22류	기타식품	291.7	6,323.0	4.6
제33류	화장품·향수	194.8	2,046.1	9.5
제95류	핸드백·가방	304.0	4,068.2	7.5
제42류	완구, 운동용품	225.1	2,709.8	8.3
제91류	시계	34.0	964.6	3.5
제49류	서적	26.0	271.5	9.6
기타 류	기타	1,329.00	424,276.8	0.3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4. 10.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해외직구 물품과 일반 수입품 간 적용제도 차이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 수입품과는 다른 관세제도가 적용된다. 해외직구 물품이 자가사용 소액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그리고 국내로 수입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그리고 추가로 수입허가, 승인 등의 수입요건 확인도 면제된다.

가.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

해외직구 물품과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과·면세 여부이다. 해외직구 물품 중에 150달러 이하 혹은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수입품은 소액이어도 과세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별 국가별로 과세 적용의 하한선(de minimis threshold)은 다르지만,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내국세를 면제하는 국가들이 많다. 그 이유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또는 친지들의 선물 등이 대부분이므로 정책적으로 선물이나 개인사용 물품 등 비상업용 물품까지 과세할 이유도 없었으며, 비싼 국제운송비용을 내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소액물품 규모가 작아서 세수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구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기업형 대규모 수입품에 적용되던 통관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대부분 국가가 기존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제도를 해외직구에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해외직구 물품이 일반 수입물품과 차이가 없으면서, 심지어 동일한 물품이 해외직구인지 일반 수입인지에 따라 과·면세 여부가 달라짐으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 수입품은 물론이고 국내 생산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구매하는데, 소비자가 유사한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에 구매하고 있다. 이런 과세 차별로 인해 해외 공급자와 국내 판매자 간에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적용되고 있다.

나. 간소한 통관절차

해외직구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또는 친지들의 선물 등에 적용되는 자가

사용 소액물품 면세제도가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통관절차도 간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수입품은 수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4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19〉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자료: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현재 대부분 해외직구 물품은 특송으로 반입되어 목록통관 등의 간이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특송제도는 기업체 서류 및 견본 등을 항공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특송제도의 본래 목적인 기업체 서류 배송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해외직구 배송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특송물품 반입 건수 중에서 해외직구 물품이 전체 특송물품의 약 93.1%를 차지하고 있다. 특송제도는 기업체 서류 및 견본 등 수입신고가 거의 필요 없는 품목 위주였기에 수입신고가 생략되었는데, 현재는 일반 수입품과 동일한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됨에도 대부분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있다.²⁴⁾

24) 〈표 II-7〉에서 보았듯이, 2023년에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은 9,693만건이다. 특송이면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해외직구 물품은 3,451만건이다.

〈표 II-20〉 특송물품 반입 건수 현황

(단위: 천건, %)

연도	일반거래물품		해외직구물품		특송 전체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7	9,749	29.2	23,592	70.8	33,341
2018	9,852	23.4	32,255	76.6	42,107
2019	9,548	18.2	42,988	81.8	52,536
2020	9,491	13.0	63,575	87.0	73,066
2021	9,522	9.7	88,380	90.3	97,902
2022	8,968	8.5	96,120	91.5	105,088
2023	9,685	6.9	131,443	93.1	141,128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수입요건확인 면제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품과 같이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품도 국내 생산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하다. 이런 제한은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된 법규만 60여 개가 넘는다. 하지만 소액물품이 아니라도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서는 이런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TV를 수입할 경우, TV 수입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TV를 수입하면 이런 인증이 면제된다. 개인으로 하여금 수입요건확인을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반입되는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수입으로 수입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수입요건확인을 갖춰야 하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해외직구로 반입되면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된다. 따라서 동일한 TV, 건강기능식품 등도 해외직구인지 일반수입인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공급자와 일반 수입업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요건확인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일반수입이 아닌 해외직구로 전환할 유인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과세면제 및 요건확인 면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수입이 아닌 해외직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요건확인을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이를 회피하는 해외직구가 증가해서 규제가 무력화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Ⅲ. 주요국의 해외직구 규제 강화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상품의 국경 간 흐름을 포함하여 국제 무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도 하였지만, 국내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균등한 시장경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품에 면세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과세는 과세비용이 징수액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ICT 기술의 발전으로 과세비용이 낮아지면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과세 효율성이 향상되고, 해외직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식 수입절차를 밟는 국내 수입업자와 면세한도를 활용한 해외 공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 소액 수입품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호주는 2017년부터, EU는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EU에서는 2028년부터 관세 면제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1. 국제사회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과세 논의

가. OECD 논의

상품의 국경 간 온라인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소액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세 최저한도의 도입은 상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따른 행정비용이 해당 상품에 대한 과세 수입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이유가 되었다.

소액 상품의 수입에 대한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성장하는 디지털 경

제의 맥락에서 점점 더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면제의 대부분이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인터넷 쇼핑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액수가 크지 않았기에 면제 혜택을 받는 수입 수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국가 간 개인의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국내 소매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이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2013년 OECD와 G20 국가는 ‘기반 침식 및 이익의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 해결을 위한 15개 항목의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중 ‘조치 1’은 디지털 경제의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여 기존 국제무역에서 디지털 경제가 초래하는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2015년도에 발표된 조치 1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OECD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재정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낮은 수준에서 과세 최저한도를 유지할 필요성과 징수 비용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과세 최저한도를 유지할 필요성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²⁵⁾ 또한 수입품목에 대한 네 가지 세금 징수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 부가가치세가 각 소액 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경에서 평가되는 전통적인 ‘국경 징수 모델’
-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자체 평가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 ‘구매자 징수 모델’
- 공급업체가 수입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 청구 및 송금해야 하는 ‘공급업체 징수 모델’
- 소액 상품에 대한 수입이 택배 운송업체, 우편 사업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중개업체에 의해 수집되어 송금되는 ‘중개자 징수 모델’

25) OECD/G20,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Final Report*, 2015, pp. 120~121.

나. 호주의 도입 과정 논의

호주는 1천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 상품(Low Valued Imported Goods)에 대한 GST를 면제하고 있었다. 소액물품에 대해 GST를 면제하는 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와 유사하였다. 즉 소액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의 실질적, 행정적 비용이 세금 징수에 따른 이득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1천호주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GST가 면제하였다.

2000년대 이후 국경 간 개인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1천호주달러 이하 수입 상품에 대한 GST 면제가 국내 공급자에게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국내 수입품 판매업체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2010년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소액물품에 대한 GST 적용은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²⁶⁾

2010년 아직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추진이 무산되었던 호주의 소액물품에 대한 GST 부과는 2017년 다시 추진되었다. 호주가 소액물품에 대한 GST 징수를 추진한 배경에는 첫째,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기존 시스템 내에서는 소액 수입품이 면세혜택을 받아 국내 사업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국내 소매 판매자들에게 가격 경쟁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였다. 소액물품에 대한 GST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해결하고 국내 상점들도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로 소액물품에 대한 GST 부과는 세금 준수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질 수 있다. 해외 공급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수입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금 규정을 명확하게

26) Australian Government Board of Taxation, *Application of GST to Cross-Border Transactions*, 2010, p. 47.

하여 불법적인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소매물품에 대한 GST 징수는 세수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전에 과세가 면제되었던 수입품목에 대하여 다른 품목과 동일한 GST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여 국내 판매 품목과 해외 구매 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고 국내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투명한 세금 부과 절차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주 정부는 기존에 1천호주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하여 허용하였던 GST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매년 5천만개 이상의 소매 해외직구와 소포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경에서 패키지와 소포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사와 평가, 징수가 진행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국경 징수 모델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수입 상품 배달의 지연과 준수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식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OECD가 2015년 제시한 공급업체 징수 모델과 중개자 징수 모델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수입하는 소매 상품에 GST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호주 매출이 7만 5천호주달러 이상인 해외 공급업체(상인/기업(Merchants), 전자유통플랫폼(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 EDP) 및 재배송자(redeliverers)가 GST를 등록·징수·송금하는 방식으로 소매물품에 대한 GST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주 정부의 새로운 입법안은 호주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의회는 시행일을 정부가 제시한 기한에서 1년 연기한 2018년 7월 1일로 권고하였다.

2017년 6월 21일 호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호주 생산성위원회에서 법안의 효과성과 대안적 징수 모델을 조사하였다. 먼저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운송

자 징수 모델(Transporter Model)과 근대화된 운송자 징수 모델(Modernised Transporter Model)을 정부가 제시한 공급업체 징수 모델과 중개자 징수 모델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대안적 방식으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징수 모델은 국제우편으로 운송되는 대부분 상품이 전자적 방식이 아닌 종이에 기반한 신고 절차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소매물품에 대한 GST 부과 방식에 대하여 “입법된 모델에는 한계가 있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대체 징수 모델을 권장할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²⁷⁾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입법된 모델이 ‘구현 당시 불완전한 대안 중에서 가장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며,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한 GST 부과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입법한 소매물품에 대한 GST 징수 방식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다. EU의 도입 과정 논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특히 우편물을 통해 탁송되는 해외 소매 수입품의 경우, 전자적 방식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이에 따라 수입 당시 공급자나 구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부정확함에 따라 원산지의 잘못된 신고나 과소 신고와 관련된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초래하였다. EU의 소매 수입상품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Copenhagen Economics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우편 탁송을 통해 EU 외부에서 EU 소비자에게 공급된 전자상거래 공급의 약 65%가 통관 과정에서 저가 신고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하였다.²⁸⁾

통상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방식의 국경 간 교역 방식이 확산하면서 EU는

27)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Collection Models for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2017, p. 10(Australian Government The Board of Taxation, *Review of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2021, p. 37에서 재인용)

28) B. Basalisco, J. Wahl and H. Okholm, *E-Commerce Imports into Europe: VAT and Customs Treatment*, Copenhagen Economics, 2016.

유럽연합의 디지털 영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5년 EU의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보고서는 유럽의 디지털 환경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²⁹⁾ 동 보고서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EU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EU는 2016년 발표된 ‘Toward a Single EU VAT Area-Time to Decide’ 보고서에서 세금 규제를 간소화하고, 유럽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며,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VAT 시스템의 통합을 제안하였다.³⁰⁾ 또한 EU 내 VAT 통합이 단순히 세금 규제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EU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모든 회원국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의 두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제도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다른 회원국에 있는 최종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EU 기업은 매출이 원거리 판매 한도(3만 5천유로/1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의 회원국에서 VAT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EU 내 온라인 거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22유로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VAT 면제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고 수입국의 세수 손실이 야기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EU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제3국의 상품을 판매하는 비EU 기업은 EU에 VAT 없이 공급할 수 있다

29)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30)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an action plan on VAT: Toward a Single EU VAT Area-Time to Decide,” 2016.

는 점에서 기존 EU 경쟁사에 비해 명확한 상업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2021년 7월 VAT 부과와 소액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였다. 새로운 법안은 VAT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비EU 기업과 EU 기업을 동등한 입장에 두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의 VAT 의무를 간소화하며 EU 단일시장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도입된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다.³¹⁾

- 통신, 방송 및 전자 공급(TBE) 서비스 공급업체가 한 회원국에서 VAT에 등록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납부해야 할 VAT를 해당 회원국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VAT 미니 원스톱 슝(Mini One Stop Shop)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B2C 서비스나 역내 상품 원거리 판매, 특정 국내 상품 공급에 적용되는 원스톱 슝(One Stop Shop)을 도입
- EU 역내 상품 원거리 판매에 대한 기존 임계값을 EU 공통으로 새로운 임계값인 1만유로로 대체
 - 22유로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를 폐지하고, 150유로 이하 수입 상품에 대한 수입 원스톱 슝(Import One Stop Shop, IOSS) 제도 도입
 - IOSS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특별 조치)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위탁수입품의 원거리 판매에 대한 간소화 조치 도입

31) EU TAXUD, *Explanatory Notes on VAT e-commerce Rules*, 2020, pp. 6~7.

2. 호주 · EU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가. 호주 소액물품에 대한 GST 부과제도

1) 소액물품 GST 부과 기준

호주의 소액물품에 대한 GST 부과는 소비자가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호주에서 공급한 것과 동일한 GST가 부과되어 국내 판매자들의 경쟁적 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소액물품에 대한 기준은 1천호주달러로, 수입 상품의 과세가격이 1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의 수입은 기존의 과세제도에 따라 국경에서 징수된다. 소액물품은 구매 가격이 1천호주달러 이하인 유형 자산(담배, 술은 제외)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해외 상품 공급자는 상품이 과세 대상 수입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즉 1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GST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GST는 해당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러 개의 소액 수입 상품을 함께 구매하여 1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주문이 단일 위탁으로 함께 배송돼도 해외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GST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해외 공급업체의 등록과 정보 제공 의무

소액물품에 대한 GST 징수를 담당하는 공급업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호주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혹은 기업(Merchant), 전자 통신을 통해 기업이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 등을 제공하는 전자유통업체(EDP), 그리고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인 쇼핑객 역할을 하거나 배송을 위한 주소를 제공하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재배송업체(Redeliverer)이다.

소액물품에 대한 GSP 부과 방식에서는 해외 공급업체의 호주 매출이 7만 5천호주달러(비영리 단체의 경우 15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호주 GST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 공급자에 대한 등록 기준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7만 5천호주달러가 비거주 공급업체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기준
이므로 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³²⁾과 해외 공급업체 간 형평성을 위해 기준
가격 이상의 공급자에 대한 등록이 아닌 모든 수입 공급자에게 등록 요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³³⁾ 그러나 최종적으로 호주에서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GST 등록 기준 가격과 동일한 7만 5천호주달러가 해외 공
급자의 GST 등록 기준 매출액으로 결정하여 호주 국내 사업자와 해외 공급
자 간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또한 등록 방식은 해외 공급업체의 호주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GST에
등록하는 표준 등록 방법과 간소화된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간소화된
GST 등록은 비거주 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사이트의 포털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
하여 기업이 호주 GST를 등록할 수 있다.

간소화된 GST 등록 방식은 표준 옵션에 따라 GST에 등록하는 데 따른
복잡성을 줄여 해외 공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국가/기업에 표준 등록 방
식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소화된 GST 등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간소화된 GST 등록 방식을 선택한 사업체에는 호주 사업자 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대신 호주 등록 번호(Australian Registration Number,
ARN)가 발급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투입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것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간소화된 GST 등록 방식과 표준 등록 방식의
기본적인 차이는 <표 Ⅲ-1>에 정리하고 있다.

32) 50만호주달러를 등록 기준 가격으로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33) 영국은 국내적으로 8만 5천파운드 이상의 매출 기업에 대하여 등록 의무를 부과한 반면,
소액 수입 상품 공급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 가격 없이 첫 판매부터 등록하도록 한다.

〈표 III-1〉 호주의 간소화된 GST 등록과 표준 GST 등록 비교

구분	간소화된 GST 등록	표준 GST 등록
신원 증명	×	○
ARN 발급	○	×
ABN 발급	×	○
GST 크레딧 청구	×	○
세금계산서, Adjustment Note 발급	×	○
등록, 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반환 및 납부 • SWIFT 은행 송금 또는 신용 카드를 통해 전자적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반환, 납부, 신고 제한 없음 (월간 반환/지급 가능) • 호주 세무대행사나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한 GST 보고를 위한 활동보고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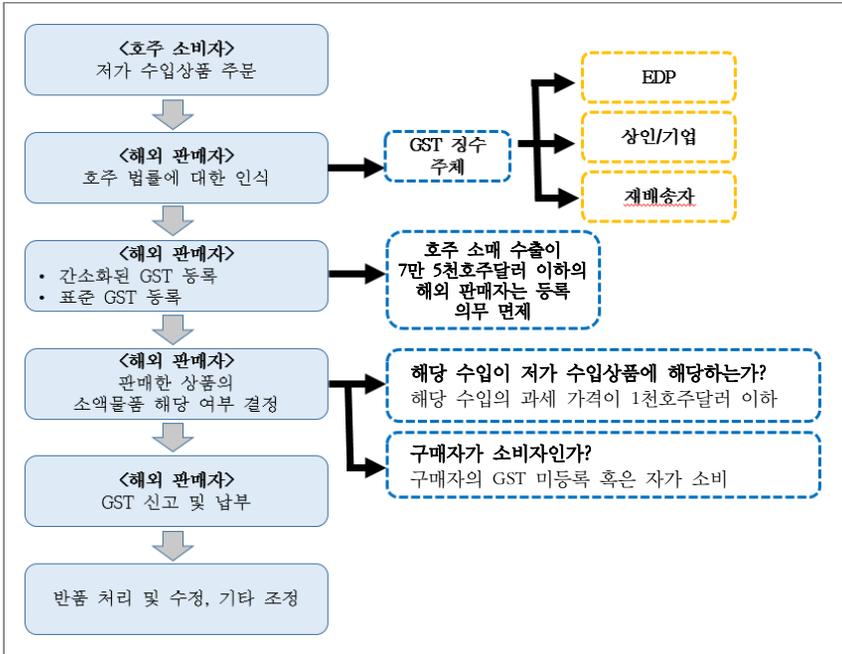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he Board of Taxation(2021), p. 42.

소액물품에 대한 GST를 담당하는 공급업체는 영수증 또는 송장 형태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업체 이름, GST 등록 번호(ABN 또는 ARN), 발급일, 공급된 상품 설명 및 GST 포함 가격을 포함한 GST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의 호주 세무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은 법에 따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소액물품에 대한 GST 적용 과정에서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과 호주 국경보호청(Australian Border Force)³⁴⁾의 공조가 중요하다. 호주 국경보호청은 통합화물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을 통해 수입 및 화물 문서에서 수집된 주요 정보를 호주 국세청에 제공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호주 국세청은 GST의 준수, 평가 및 징수를 담당하면서 해외 공급자의 GST 등록과 운영을 총괄하고 해외 공급자의 GST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34) Australian Border Force(ABF)는 호주의 국경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2015년 7월에 설립되어 이전의 세관 및 국경 보호 서비스가 통합된 조직이다.

[그림 III-1] 호주의 소액물품에 대한 GST 징수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he Board of Taxation(2021), p. 39.

나. 호주 소액물품 GST 부과제도에 대한 평가

호주 정부가 소액물품에 대한 GST 부과를 제안했던 2016년도에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정부의 입법 모델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하였다. 첫째, 생산성위원회는 정부의 소액물품에 대한 GST 징수가 정부의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호주 정부의 수입 추정치는 징수율이 처음 3년 기간에 27%에 도달하고 6년 후에는 최대 54%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³⁵⁾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생산성위원회는 정부의 징수 모델이 해외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으며, 해외 공급자에게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예상에 부정적

35)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7), p. 6.

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공급자 징수 모델은 해외 공급자에게 부당하게 추가적인 부담을 전가하게 되며, 이는 호주의 국제무역 조약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소액물품에 대한 GST 제도의 초기 이행 상황을 검토한 호주 조세위원회(The Board of Taxation)의 보고서³⁶⁾에 의하면, 먼저 소액물품에 대한 GST 징수액은 2018/19~2019/20 회계연도 기간에 정부의 예상 징수액인 1억 7천만호주달러를 크게 넘는 7억 6천만호주달러를 기록하였다.³⁷⁾ 이러한 예상 징수액을 초과하는 징수 실적은 호주 생산성위원회의 우려와는 달리 초기부터 호주에 수출하는 해외 공급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고, 효율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I-2〉 호주 소액물품에 대한 GST 징수액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17년도 정부 예상액	70	100	130
실제 징수액	360	400	N/A

주: 2021년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2020/21에 대한 실제 징수액 정보 부재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he Board of Taxation(2021), p. 61, Table 3

2021년 7월까지 총 1,420개 해외 공급자가 소액물품에 대한 GST 부과에 따라 호주 세무국에 GST를 등록하였는데, 이 중 간소화된 등록 방식으로 등록한 기업은 약 90%에 해당하는 1,285개 기업에 달하여 해외 공급자가 호주 정부가 제공한 간소화된 GST 등록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매출에 따른 등록자 분류를 보면 연간 매출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³⁸⁾이 전체 등록 기업의 약 60%(총 850개 기업)를 차지하여 호주로 수출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자들의 GST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GST 등록 현황은 해외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가 예상보다 원활하게

36) Australian Government The Board of Taxation(2021)

37) Australian Government The Board of Taxation(2021), p. 61.

38) 호주에서 연간 매출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한다.

이루어졌으며 소액물품에 대한 GST 부과를 위한 공급업체의 부담이 예상했던 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I-3〉 해외 공급업체 매출액에 따른 GST 등록 현황

(단위: 개)

매출액	표준 등록	간소화 등록	총계
1천만호주달러 이하	85	765	850
1천만~5천만호주달러	20	20	45
5천만~2억 5천만호주달러	10	5	15
2억 5천만호주달러 이상	5	5	100
매출액 파악 불가	10	490	500
총계	135	1,285	1,420

주: 2021년도 7월 28일 기준으로 작성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he Board of Taxation(2021), p. 62, Table 4

일부 소규모 사업체(호주 매출이 7만 5천~50만호주달러인 사업체)는 GST 등록 준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소규모 공급자는 규모가 큰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주의 새로운 GST 징수 방식에 대한 이해나 정보 취득이 어렵고, 준수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호주 조세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당시까지 고의적인 불이행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호주 세무국이 해외 공급자에 새로운 제도를 알리기 위해 협력적 접근 방식을 통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했고, 동시에 대부분 주요 해외 공급자들도 자사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제도 준수에 협력한 결과로 평가된다.³⁹⁾ 또한 무엇보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과 호주 국경보호청(Australian Border Force)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사업자의

39) 호주 세무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 및 초기 단계에서 세무국의 고위 임원들이 영국, 미국, 유럽, 중국 등 잠재적 납세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시행한다. 또한 비영어권 국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국을 위해 일부 정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호주 국세청 사이트(ato.gov.au)를 통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GST 진담 이메일(AustraliaGST@ato.gov.au), 호주 국세청 고객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요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소매 매출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해외 공급자의 경우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GST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세관과 국세청의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 준수에 다수의 업체가 협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GTS 징수모델은 행정 효율성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초로 호주 정부가 공급자 징수모델을 제안했을 때, 호주 정부는 처음 3년 동안 추가로 약 3억호주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비용으로 3년간 약 1,300만호주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⁰⁾ 이는 추가 수입 1달러당 약 4.4센트의 행정비용이 투입됨을 의미한다. 실제 징수세액이 정부 예상액을 크게 웃돈(최초 2년에만 약 7억 6천만호주달러 징수) 가운데 최초의 비용 추정치가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정부 추가 세수 대비 비용 비율은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는 효율성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수입 통관할 때 국경에서 징수하는 전통적 징수 방식과 비교해 해외 공급자에 대한 징수 방식은 매우 효율적인 제도임을 보여준다.

다. EU의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2021년 7월 1일부터 EU는 EU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세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22유로 이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철폐하였다. 22유로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VAT 면제 폐지로 EU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액수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150유로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였다.⁴¹⁾ 그래서 EU는 150유로 이하의 수입품을 소액물품(Low Value Import Consignment)으로 규정하고, 150유로 이하 소액

40)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7), p. 6.

41) 기존 EU에서는 22유로 이하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하고, 22유로 이상이면서 150유로 이하인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하고 관세는 면제하였다. 그리고 150유로 이상인 수입품은 일반상품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과세된다.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간소화하고 수입품의 온라인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칙을 도입하였다.

2021년 EU는 소액물품에 대한 VAT 징수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국 또는 제3영토에서 수입된 상품의 원거리 판매를 위한 특별제도(Special Scheme)와 수입 VAT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특별조치(Special Arrangement)를 도입하였다. 수입제도(Import Scheme)로도 불리는 특별제도는 IOSS라는 VAT 징수 방식이며, 특별조치는 주로 우편 사업자나 택배 운송업체와 같이 배송기관을 위한 간소화된 VAT 징수제도이다. 간소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EU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징수된다. 첫째, IOS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전자 인터페이스가 구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업체/전자 인터페이스에 지불되며, 수입 과정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절차는 생략한다. 둘째, IOS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를 사용하여 상품을 세관에 제출하는 사업자/배송자에게 부가가치를 징수하거나 표준 부가가치 징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1) 수입 원스톱 숍(Import One-Stop Shop, IOSS) 제도

가) 적용 대상

수입제도라고 흔히 불리는 이 제도는 제3국 또는 제3영토에서 EU 내 고객에게 발송 또는 운송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소액 상품의 원거리 판매에 대한 VAT를 징수하고 IOSS를 통해 이 VAT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IOSS를 사용하여 소액상품을 EU로 수입하는 경우, VAT는 고객이 구매 가격의 일부로 지불하여 수입 통관 시점에 VAT 징수는 면제되고 추후 공급업체나 전자 인터페이스가 정부에 VAT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IOSS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공급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IOSS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7만 5천호주달러 이상의 매출을 지닌 기업에 대하여 GST 신청을 의무로 하는 호주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IOSS는 제3국 혹은 제3지역에서 발송/운송되면서 제3국에서 발송/운송되

고 상품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⁴²⁾가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상품 공급자가 제3국 혹은 제3지역에서 상품의 발송 또는 운송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급자가 또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회원국의 고객 또는 기타 적격자에게 운송 또는 발송되면서, 상품에 EU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적용할 수 있다.

IOSS는 기본적으로 EU에 설립 혹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U에 설립된 공급업체가 자사 온라인 물품을 통해 EU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나 EU에 설립되어 원거리 판매를 쉽게 하는 전자 인터페이스 기업은 IOSS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공급업체나 전자 인터페이스 기업은 해당 기업이 EU와 VAT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IOS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공급업체나 전자 인터페이스 기업이 EU와 VAT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공급업체/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은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IOSS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품 판매가 EU와 VAT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제3국이나 영토에서도 상품을 공급하거나, EU와 VAT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EU에 설립된 중개인을 통해 IOSS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IOSS 중개자

EU 또는 EU가 VAT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설립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공급자 및 전자 인터페이스)가 IOSS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 중개자를 임명해야 한다.⁴³⁾ 중개자는 EU에 설립된 과세 대상자로 자신을 임명한

42) 내재가치란

- a. 상업용 상품의 경우: 유럽 연합 관세 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될 때의 상품 자체 가격으로, 운송 및 보험 비용은 제외하지만 가격에 포함되어 송장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관 당국이 관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세금 및 요금을 제외한 가격, 혹은,
- b. 비상업적 성격의 상품의 경우: 유럽 연합 관세 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었을 경우 상품 자체에 대한 지불가격을 의미함.

43) EU에 설립되어 있거나 EU와 VAT 상호지원협정을 맺은 국가에 설립된 과세 대상자도

공급자를 대신하여 IOSS VAT 신고 및 VAT 지불 등 수입 제도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또한 공급자와 함께 중개자는 VAT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VAT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EU 회원국은 VAT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중개자로부터 VAT 회수를 시도하고, 이 시도가 실패하면 공급자로부터 VAT를 회수할 수 있다.

다) IOSS VAT 식별번호

EU 회원국은 IOSS에 등록된 공급업체나 전자 인터페이스, 공급업체를 대행하는 중개업체에게 IOSS VAT 식별번호를 발급한다. 전자 인터페이스는 해당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EU 고객에게 수입 소액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의 공급업체로 간주하며, 따라서 수입 소액 상품의 원거리 판매를 수행하는 공급업체의 수와 관계없이 단일 IOSS VAT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그러나 중개업체(중개자)는 자신이 대리하는 각 과세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IOSS VAT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12자리 숫자와 영문 문자로 구성된 IOSS VAT 식별 번호는 IOSS 제도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거리 판매를 신고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또는 전자 인터페이스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⁴⁴⁾ 공급업체 또는 전자 인터페이스는 IOSS VAT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EU 전체의 고객에게 수입된 상품의 모든 원거리 판매를 신고한다.

라) 운영

또한 IOSS 식별번호를 사용한 수입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전자 포털에 등록하고,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위탁품으로 EU 회원국으로 발송되는 비소비세 상품의 공급에 대해 고객에게서 VAT를 징수한다. EU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고객에게 VAT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상품의 운송업체나 세관 신고자(우편 사업자, 택배 운송업체 또는 세관

중개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44) 150유로를 초과하는 상품의 공급이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신고는 IOSS 식별번호가 아닌 Union Scheme이나 Non-union Scheme에서 부여받은 식별번호로 신고해야 한다.

대행업체 등)에게 IOSS VAT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EU에서 통관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관에서는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IOSS VAT 식별번호를 통해 해당 수입품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유효한 경우 VAT는 통관 후 공급업체나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납부한다.

IOSS 제도를 사용하여 EU 고객에게 소액 수입 상품을 판매한 공급업체나 전자인터페이스 기업은 판매된 모든 적격 상품 공급에 대해 회원국에게 월별 IOSS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개인을 통해 IOSS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개인이 식별 회원국에 월별 IOSS VAT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별 IOSS VAT 보고서에는 판매된 상품의 총가치, VAT 비율, 납부해야 할 VAT 총액 등이 포함되며, 보고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특별조치(Special Arrangements)

가) 적용대상

특별조치는 제3국 혹은 제3영역에서 EU 고객에게 공급되는 150유로 이하인 위탁 상품으로 EU 소비세(harmonized excise tax)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조치를 통한 VAT 신고는 IOSS 제도나 수입에 대한 표준 VAT 징수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입 VAT 징수를 위한 간소화 조치로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 세관 대리인으로서 수입을 위해 소액 상품을 신고하는 EU의 우편 사업자, 택배 운송업체 또는 기타 세관 대리인을 위해 도입되었다.

나) 운영

제3국 혹은 제3영역에서 EU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수입하는 고객에게 EU에서 VAT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는 고객이 세관에 상품을 제시하는 신고자/개인에게 VAT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조치를 사용하는 신고자는 수입품에 첨부된 상업 송장/문서를 기준으로 가격과 징수하는 VAT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입국 세관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VAT를 납부한다. 통관 이후 신고자는 고객에게 VAT를 청구하며, 일반

적으로 EU의 고객으로부터 VAT를 지불받은 후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게 된다.

특별조치에 따라 신고된 모든 상품에 대해 표준 VAT 세율을 사용한다. 이는 신고자가 소액물품에 포함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VAT 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객은 표준 VAT 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감면된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특별조치를 적용할 수 없고, 신고자는 표준 VAT 징수 절차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VAT를 징수하게 된다.

세관에 상품을 신고한 신고자는 해당 월에 실제로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VAT만 세무/세관 당국에 납부하며, 따라서 고객이나 수입업체가 납품하지 않았거나 수락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VAT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해당 위탁물에 대한 VAT 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객이나 수입업체의 미납/미수락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특별조치 신고자 혹은 세관에 상품을 제시하는 사람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VAT를 관련 당국에 한 달에 한 번씩 납부한다.

사업자는 특별조치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고객이 거부한 소포에 대한 VAT 미납을 정당화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기록 보관 기간은 해당 회원국이 결정한다. 다만 이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은 세관법에 따른 기존 기록 보관 의무 외에 신고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라. EU의 소액물품 관세 면제제도 폐지

EU가 기존의 150유로 이하의 물품에만 적용되던 관세 면제제도를 2028년 3월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의 부가가치세만 과세하던 것을 관세 까지도 폐지하는 것이다. 향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EU의 이러한 과세 면제 철폐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호주는 1천호주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EU가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모두 부과하기로 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부과되고 있지만 150유로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면세함으로 인해, 해외직구 물품의 평가절하(저가신고) 또는 분할신고 등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둘째, 가격이 비싸고 저렴한 것과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 통관 처리가 디지털 자료로 처리되어, 예전과 달리 과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소액물품에 면세제도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행정부담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목적만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⁴⁶⁾ 셋째, EU는 회원국의 세수를 보호하고, 관련 기업의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⁴⁷⁾ 관세면제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전통적인 무역과 EU 소매업체보다 제3국 전자상거래 운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U는 해외직구에 적합한 새로운 신고서식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관세부과를 쉽게 적용하기 위해 5개의 간이세율 적용 품목군 제도(bucket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간이세율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소액물품이라도 관세부과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등의 정보가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고 이에 따라 세관과 기업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5개의 간이세율은 각 품목군별로 0%, 5%, 8%, 12%, 17%가 적용된다.⁴⁹⁾ 서적 등은 관세 0%가 적용되어 실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기능식품 등은 17%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EU는 기본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해 과세한다는 입장으로 세계관세기구

45)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Explanatory Memorandum

46)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Whereas

47)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Whereas

48)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Whereas

49) 부록 참고

(WCO)에서도 과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EU는 선제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마. EU의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 개정 방향

현행 IOSS 제도와 특별조치는 제3지역 또는 제3국에서 수입된 원거리 판매에 대한 간소화 규정으로 관세의 소액면세와 동일하게 150유로 이하의 물품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150유로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폐지되면서 부가가치세 또한 이러한 기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150유로 이하의 물품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간주수입자(deemed supplier, 공급자), 수입신고인(물품 제시자) 등도 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⁵⁰⁾ 따라서 부가가치세 지침(Council Directive 2006/112/EC)의 관련 조항에서 150유로 기준을 모두 삭제하였다.⁵¹⁾ 부가가치세 또한 원거리 판매업체를 위한 간소화 규정의 기준을 폐지하여 전자상거래 업체가 직면하는 규정 준수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제안하였다.⁵²⁾ 먼저 간주공급자 조항에서 150유로 한도를 삭제하여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개별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등록 의무를 제거하였다.⁵³⁾ 마켓플레이스 등에게 제3영역 또는 제3국에서 수입되는 원거리판매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부여하여 개별 판매자의 판매를 쉽게 하였고, 제3국 혹은 제3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거리 판매에 대한 특별제도의 적용 기준도 제거하여 모든 과세대상자가 IOSS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⁵⁴⁾ 따라서 원거리 판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각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50)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Explanatory Memorandum

51)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제1조

52)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Explanatory Memorandum

53)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Explanatory Memorandum

54)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Explanatory Memorandum

단일의 회원국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특별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세관에 물품을 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특별방식에 대한 150유로 한도도 폐지되었다.⁵⁵⁾ 이에 따라 우편사업자, 특송업체, 세관 대리인 및 고객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EU 회원국은 이와 같은 개정안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 규정 및 행정조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채택하고 공포하며, 개정안을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⁵⁶⁾

3. 그 외 주요국 제도 특징

가. 중국

중국은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한해 거래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30%를 감면하면서⁵⁷⁾ 간이한 통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⁵⁸⁾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이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규제개선 관련 업무통지」⁵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직구를 말한다. 만약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외직구는 일반 수입 통관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중국 세관이 지정한 세관을 거쳐야만 해외직구 물품(전자상거래 소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으로 인정되는 품목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목록」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된다.⁶⁰⁾ 현재 1,476개 품목에 한정해서 해외직구 물품(전자상거래 소매

55)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Explanatory Memorandum

56)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제2조

57)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제3조

58) 이홍숙, 「중국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한국무역상무연구학회, 2020, p. 194.

59) 「关于完善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2018. 11. 28.)

수입)으로 인정해서 간이한 통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표 III-4〉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목록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품목수	주요품목
제1차	2016. 4. 6.	2016. 4. 6.	1,142개	일부 식품음료,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 컵 등
제2차	2016. 4. 15.	2016. 4. 16.	151개	의료기기, 과일, 우유 등
제3차	2018. 11. 20.	2019. 1. 1.	1,321개	1, 2차 목록에 주류, 헬스케어 용품 등 63개 품목 추가 및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조정
제4차	2019. 12. 24.	2020. 1. 1.	1,413개	3차 목록에 냉동 수산물, 주류, 가전 등 92개 품목 추가
제5차	2022. 1. 28.	2022. 3. 1.	1,476개	4차 목록에 스키용구, 골프용구, 토마토주스 등 29개 품목 추가 및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조정

자료: 이홍수, 「중국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보세구역·FTZ에서의 B2C 수입 허용 요구 관련 국회 토론회, 국회 의원 회관 윤상현 의원실, 2022. 12. 20., p. 19.

추가로 중국에서는 해외직구 1회 거래한도와 함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연간 거래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조세정책」⁶¹⁾에서 정한 거래한도는 개인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1회 거래한도는 5천위안이고, 연간 거래한도는 2만 6천위안이다.⁶²⁾ 즉 단일 거래에 대해서만 면제를 적용하던 중국은 5천위안의 단일 거래 한도와 더불어 개인이 연간 누적 소액 수입품목의 수입액이 2만 6천위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누적 수입액이 2만 6천위안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입과 동일한 관세 및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해외직구 물품을 한정(1,476개)하고

60)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목록 공개에 관한 공고(关于公布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的公告)」(2016. 4. 6.)

61)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关于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2016. 3. 24.);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 조세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完善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2018. 11. 29.)

62)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 조세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제1조

해외직구의 연간한도(2만 6천위안)도 설정하면서, 세관 통제하에 지정된 세관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에 대해서만 증치세 및 소비세를 70% 징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밖의 세관으로 반입되면 일반 수입과 동일한 통관절차 및 과세 여부가 적용된다.

나. 미국

앞선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베이 등 다수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로 인해 해외직구 반입보다는 해외직구 수출(일명 역직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리고 2016년에는 면세한도를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술, 담배 포함)가 800달러이다. 해외직구의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같게 설정한 것으로 추측한다. 즉 미국은 1인이 1일에 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 가격의 합계가 선적국의 공정 소매가격으로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제세를 면제하고 있다.⁶³⁾ 다만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면세를 받기 위해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하여 발송한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8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적하목록 제출로 반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⁶⁴⁾ 다만 일부 정부기관(Partner Government Agencies)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은 정식 또는 약식신고를 통해야 한다.⁶⁵⁾

근래 들어 미국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해외직구 관련 위조, 미승인 물품의 배송, 허위가격 신고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사전에

63) 19 U.S.C. 제1321조

64) 19 CFR 128.24 Informal entry procedures

65) CBP, "Test Concerning Entry of Section 321 Low-Valued Shipments Through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 2019. 8. 13.(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8/13/2019-17243/test-concerning-entry-of-section-321-low-valued-shipments-through-automated-commercial-environment>, 검색일자: 2023. 6. 12.)

식별하여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세관은 해외 판매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⁶⁶⁾ 해외 판매자의 정보 등이 불분명하면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다. 뉴질랜드

호주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 GST를 과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9년 말부터 GST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총 판매금액이 6만뉴질랜드달러인 역외 사업자는 뉴질랜드에 사업자 등록 후 GST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뉴질랜드 역시 관세 면세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관세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4. 비교 및 시사점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관세제도로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OECD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WCO 국경 간 전자상거래 표준체계(WCO Cross Border E-Commerce Framework of Standards)를 논의하고 있다. 국경 간 해외직구에 대한 국제표준 통관절차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 EU, 호주, 중국 등이 자국의 제도를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WCO에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반면 EU는 해외직구 면세가 해외기업에 이득을 주면서 자국 기업에는 피해를 주고 있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과 EU 입장이 상반되어 WCO 중심의 해외직구 통관제도

66) CBP, "CBP Enhances Accountability in E-Commerce through Ruling on Duty Exemptions for Low Value Shipments," Media Release, 2020. 8. 3, <https://wa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enhances-accountability-e-commerce-through-ruling-duty>, 검색일자: 2024. 10. 15.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국제적 상황에서 EU와 호주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EU는 관세도 과세할 예정이다. 앞선 호주의 도입과정에서 보았듯이, 호주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균등한 시장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GST) 과세를 시도하였지만,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7년 재추진하면서 여전히 행정적인 한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하여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GST 징수 규모가 예상보다 작거나, 해외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상을 넘는 GST 징수 실적과 다수의 해외 공급자가 등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런 결과는 호주 정부의 간소화된 제도 설계, 중국 등 소규모 해외 공급자에 대한 특화된 제도 안내 등의 노력의 결과라는 점도 우리 과세 당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무엇보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과 호주 국경보호청(Australian Border Force)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사업자의 소매 매출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해외 공급자의 경우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GST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세관과 국세청의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 준수에 다수의 업체가 협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GST 징수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비용 대비 세수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하여 호주의 징수 방식이 효율적인 제도임도 보여주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EU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공평한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물품의 저가신고가⁶⁷⁾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⁶⁸⁾ EU는 여기에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

67) 코펜하겐 이코노믹스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품의 65%가 저가신고된 것으로 추정됨(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Explanatory Memorandum).

세제도로도 2028년부터 폐지할 예정인데, 이 또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다. EU가 관세 면세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관세 면세제도로 인해 저가신고 및 분할신고 등을 통한 과세회피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다. 관세 면세로 인한 저가신고 등의 과세 회피 문제는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EU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간소화된 간이 세율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간이세율제도는 우리도 현재 운영하는 제도로서 해외직구에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반면 미국은 해외직구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 해외직구 반입보다는 해외 공급자로서의 해외직구 공급이 커서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해외 사업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해외직구를 관리하고 있다. 통관 물품의 위험관리와 과세를 위해서 해외직구 물품 및 외국 공급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초기부터 해외직구에 대한 강한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특정 세관을 지정하고 해외직구 가능 품목 및 연간 거래한도 등을 통해 해외직구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직구 도입 초기부터 특정 세관을 지정하였다면, 향후 논의할 GDC제도 활용이 용이할 수 있었지만, 중국처럼 특정 세관만을 지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 납부액의 70%를 과세하고 있다. 연간 거래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연간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 등은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특징이 묻어나고 있다.

68) 해외직구 통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관세사들과의 면담에서 다수의 저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반 수입을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하려는 상황에서 동일한 일부 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면세로 반입되는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IV. 전자상거래 통상환경 변화 분석

본 장에서는 해외직구 과세 문제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국제물류센터(GDC)에 대해 논의한다. 역내 거대 통상협정을 등장시킨 국제통상환경 변화, 해외직구라는 수출국 생산자/판매자와 수입국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B2C 형태의 새로운 물류 방식의 진화와 역내 거대 통상협정을 활용한 GDC 활용성 증가 등을 살펴보고, 이런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국내 GDC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다.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다자무역체제에서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논의

1)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지난 30년간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국제통상질서를 이끌어 왔다. 164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가능한 국제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제공하였다. 1948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이끌었으며,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무역을 위한 원조 등과 같은 무역과 연관된 신통상분야의 다자간 논의 및 합의를 위한 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협상 개시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있으며, WTO의 큰 장점으로 여겨졌던 분쟁해결절차에서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상소기구위원의 신규 임명을 하지 못하면서 상소기구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마비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이끌던 WTO의 지지부진한 전개 및 기능 상실은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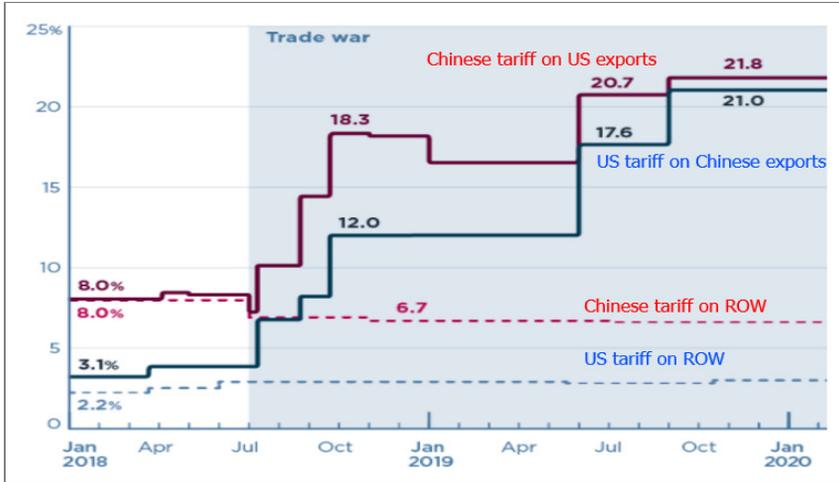
강문성 외(2020)는 DDA 협상 부진을 크게 네 가지 원인으로 꼽고 있다. 첫째, 우루과이(Uruguay) 라운드에서 DDA로 넘어오면서 회원국 수가 총 123개국에서 164개국으로 급증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이 낮아졌고, 둘째로 농산물시장개방, 농업 보조금, 서비스시장 개방 등 참여국에게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셋째, DDA에서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개도국들을 선도하는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점,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참여국들의 관심이 다자무역체제보다 양자 간 혹은 지역무역협정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으로 분산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⁶⁹⁾

또한 2017년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된 미·중 무역갈등은 향후 WTO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2018년 7월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총 818개 품목(약 340억달러)에 대하여 25%의 고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이에 중국은 미국이 수출하는 545개 품목(340억달러)에 역시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응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양국이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18년 1월 3.1%에서 2020년 1월 21.0%로 상승하였으며,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도 2018년 1월 8.0%에서 2년 후인 2020년 1월 21.8%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두 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은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69) 강문성·송백훈·김한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미래성장연구』, 제6권 제1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0, pp. 144-145.

[그림 IV-1] 미·중 관세전쟁

(단위: %)



자료: Chad P. Brown, *The US-China Trade War and Phase One Agreement*, Working Paper 21-1,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1, p. 11, Figure 1

WTO 체제의 대표적인 무역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심화는 향후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입지와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지역의 안보 위협 등 국제정세 불안정성의 확산은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설립된 WTO 체제의 위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

2) WTO체제에서의 디지털 통상 논의

디지털 통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⁷⁰⁾ 그러나 디지털 통상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아니며, 국가별·협정별로 이를 달리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

70)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통상 국제규범 선점 경쟁의 본격화」, 『통하는 세상 통상』, Vol. 135, 2023, p. 6.

에서 디지털 통상의 개념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이 정의하는 디지털 무역(통상)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였다. 다자간 규범을 지닌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과는 달리 디지털 무역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WTO 차원의 규범이 부재하였고, 이에 WTO 출범 직후인 1998년, WTO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율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반을 운영하였으나 회원국 간 합의 도출은 실패하였다.

이후 2019년 총 7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협상을 개시하면서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⁷¹⁾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 대한 속단은 어렵지만, WTO 디지털 무역 협상에 대한 참여국 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한 WTO 체제의 일반적인 위기와 더불어 디지털 무역 협상에 대한 국가 간 극명한 입장 차는 하나의 통일된 합의를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디지털 통상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미국과 이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려는 중국은 디지털 통상의 범위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데이터 지역화 조치, 강제 기술이전 등에 반대하면서 디지털 통상에 자유주의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과 국가 안보, 체제와 사회 안정 등 국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자의적 규제를 강조하는 중국의 최소 접근법적 입장은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참여국들은 공감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 차이로 인해 WTO 차원에서의 디지털 무역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71) 현재까지 협상 참여국에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협정은 ① 디지털 무역원활화(enabling digital trade) ② 개방과 디지털 무역(openness and digital trade) ③ 신뢰와 디지털 무역(trust and digital trade) ④ 공통 이슈(cross-cutting issues) ⑤ 통신 ⑥ 시장접근 등 6개 분야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그룹 회의에서 참가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 디지털협정의 주요 쟁점 사안

1)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금지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는 해외기업이 수집한 자료는 자료를 수집한 국가 안에서 데이터로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및 자국의 정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중국은 데이터 저장 설비를 중국 내에 두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찬성하고, 미국, 일본 등은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 설비의 지역화 금지의 대상은 단순히 연산·정보처리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송이나 통신, 교육, 의료 등 시장개방이 허용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자국 영역에 데이터 저장을 위한 설비 인프라 구축을 강제하거나 국내 설비 사용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까지도 적용된다.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금지는 지역무역협정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협상에 참여했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최초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위치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항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본·몽골 EPA,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및 RCEP에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금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2) 국경 간 정보이동

국경 간 정보이전에 대한 조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전이 적용 대상인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정보’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가능 정보까지 포함하지만, ‘적용 대상인’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양자/다자 협정에서 국경

간 정보이전에 관한 조항은 금융을 제외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 및 투자자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국가 간 정보이전을 금지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 100대 ICT 기업 중, 50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IT 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제한 조치를 철폐하지는 입장을 지지하였고, 미국이 참여하는 양자 혹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체결된 FTA에서 미국은 국경 간 정보이동을 노력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강화하였고, 미국이 참여한 TPP(이후 CPTPP로 전환) 제 14.11조에서 국경 간 정보이동은 '당사국은 대상인(covered person)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었다.

데이터 저장설비 지역화 조항과 유사하게 국경 간 정보이동 조항에 대한 논의도 예외조항의 인정 범위와 방식에서 국가 간, 협정 간 차이를 보이면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ICT 선진국이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고, 활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것과는 달리 해외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나 유출되는 자료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중국은 예외조항을 폭넓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3)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에 대한 이전·접근 요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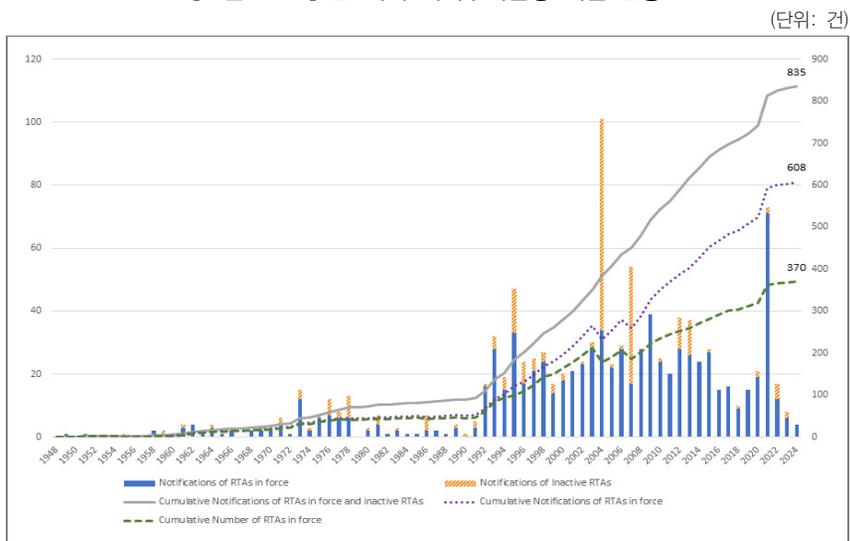
2010년 중국 정부가 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심사 및 인증 등의 절차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제출 요구를 강화하면서 소스코드 공개·이전에 대한 규범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에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을 자국의 영역으로 수출, 유통,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이전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역규범을 도입하게 된다.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에 대한 이전·

접근 요구를 금지하는 의무조항은 CPTPP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USMCA, 일·EU EPA, 싱가포르·호주 DEA 등 여러 무역협정에서 합의되었다.

다. 역내 통상협정의 확산

200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확산은 국제통상 분야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WTO 다자무역체제 약화와 함께 기존에 자국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혹은 역내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에 나서면서 전 세계 RTA/FTA 체결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V-2]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 WTO, <https://rtais.wto.org/UI/charts.aspx>, 검색일자: 2024. 4. 30.

우리나라도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양자/다자간 FTA 협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4년 6월 현재 총 59개국과 21건의 통상협정이 발효되었다. 특히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ASEAN 10개국을 비롯하여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지역의 Mega FTA로 자리하였다. 또한 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와 같이 역내 거대 통상협정이 등장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 약화와 함께 국제통상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 통상협정은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전쟁, 신냉전의 확산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신통상규범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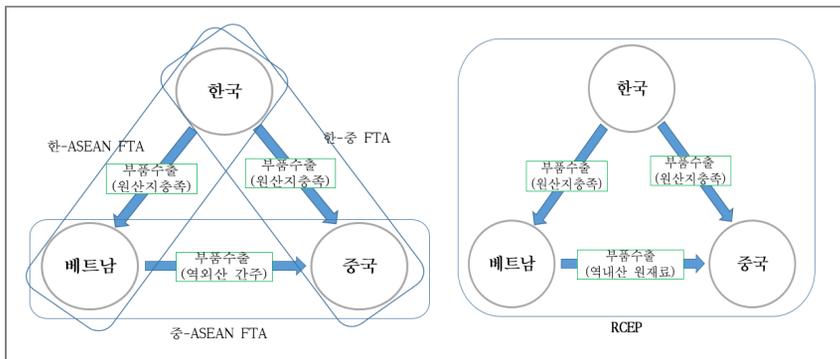
1) RCEP

200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역내국들은 역내를 아우르는 통상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한국의 제안으로 ASEAN+3에 대한 공동연구가 시작되면서 EAFTA(East Asia FTA)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역내 통합 과정에서 중국의 동남아 시장 확장을 우려한 일본은 기존의 ASEAN+3 국가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를 제안하였다. EAFTA와 CEPEA로 나뉘어 전개되면서 경제통합 논의의 집중력이 약화되었고, 이후 10여 년간 지지부진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 ASEAN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ASEAN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통합인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13년부터 총 31차례의 공식 협상과 8차례의 장관회의를 거쳐 2019년 협정문에 합의, 2020년 공식 서명을 거친 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2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RCEP은 GDP, 인구, 교역규모에서 각각 전 세계 1/4을 넘어서는 거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Mega FTA로, 기존에 양자 간 FTA로 얽혀 있던 역내 생산 시장을 단일화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RCEP 협정문 제3.4조 제1항에서는 ‘... 제3.2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역내국 간 재료 누적을 인정함에 따라, 기존 역내국 간의 양자

간 FTA에서 누적의 범위를 역내국 전체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RCEP 이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중간재가 베트남에서 최종재화의 생산에 사용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한국에서 수출한 중간재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출될 때, 역외산 재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RCEP 원산지규정하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중간재는 역내산 재료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역내산 재료로 인정된다. 이러한 RCEP 누적조항에 따른 누적 범위의 확대는 역내국 생산시장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고, 역내 GDC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3] RCEP의 역내 생산시장 단일화



자료: 저자 작성

2) CPTPP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4개국(Pacific 4, P4)을 중심으로 추진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경제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총 19차례의 협상을 통해 2016년 정식 서명된 TPP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을 포함하고, 전 세계 인구의 11.1%, GDP의 37.4%, 무역의 25.9%에 해당하는 Mega FTA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로 주목받았다. 역내 FTA로 큰 기대를 모았던 TPP는 2017년 취임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

하면서 그 위상이 매우 축소되었고, 다른 참여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도 대부분 중단되면서 와해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의 주도로 11개 회원국은 미국을 제외한 채 시장개방을 위한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였고, 기존 TPP를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8년 발효되었다.

2021년 미국 바이든 정권이 집권하면서 CPTPP 가입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영국, 중국, 대만 등 3개국은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은 CPTPP 가입 희망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지속되는 미·중 무역갈등 등 불안정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CPTPP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IPEF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운영은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를 반영하여 미국은 2021년 2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ASEAN 회원국 중 7개국⁷²⁾ 등 총 13개국이 IPEF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2022년 5월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 협상을 출범하였다.⁷³⁾

IPEF 협상은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및 세제·반부패 등 4대 분야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IPEF는 기존 국가 간 통상/무역 협상과 달리 관세 인하/철폐에 대한 협상을 포함하지 않았다. IPEF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모두 신통상 이슈로,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통상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IPEF는 단일 협정이지만 참여국이 자발적으로 자국이 참여할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점도 기존 통상협정과 차별되는 특징이다.

72)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73) 이후 5월 26일 남태평양 피지가 IPEF 참여에 동의하면서 총 14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IPEF 협상은 현재 총 일곱 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되었고, 2023년 5월에 필러 2 공급망 협정이 타결되었고, 11월에 필러 3(청정경제)과 필러 4(공정경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등 국가별로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된 필러 1은 아직 협상 중이며, 우리나라는 2024년 4월 17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에 이어 참여국 중 여섯 번째로 IPEF 공급망 협정(필러 2)을 발효하였다.

2. 국제물류센터(GDC)를 활용한 해외직구 모델

가. 새로운 해외직구 물류 방식 발전

전통적으로 국가 간 교역은 수출국 기업과 수입국의 수입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대량 수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B2B2C(Business to Business to Consumer)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하고 특송 물류의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면서 수출국의 생산자/판매자와 수입국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형태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B2C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직구는 수입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쉽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선호되었다. 동시에 수출국 입장에서도 B2C 방식은 관세를 우회함에 따라 수입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전통적인 B2B2C 방식과는 달리 수입국에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선호되었다. 이러한 B2C 방식의 발전된 형태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B2C Direct Injection Model'이 도입되었다. B2C Direct Injection Model은 수출국 기업이 항공화물로 대량의 패키지를 발송하고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국 통관을 통과한 후, 수입국 배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새로운 배송 방식을 통해 기업들은 효율적인 B2C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최근에는 소매업체가 도매업체에서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도록 하는 드랍shipping(Drop Shipping) 형태의 거래

방식이 도입되었다. 드랍쉬핑 방식은 소매업자가 대량의 재고를 구매 및 보관하는 대신에 ‘드랍쉬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본인의 웹사이트 혹은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소매업자가 배송 정보를 드랍쉬핑 회사에 전송하여 드랍쉬핑 회사가 창고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드랍쉬핑 방식의 거래에서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이며, 소매업체는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모으고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온라인 B2C 판매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도 ‘배송 대행’의 형태로 드랍쉬핑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 방식이 존재하였으나, 기존의 드랍쉬핑 서비스가 소규모의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IT를 활용한 자동화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집목한 대규모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한편 플랫폼 기업의 물류 및 운송업체와의 수직적 통합도 최근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거대 인터넷 플랫폼은 물류 및 배송 업체와 수직적 통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다. 미국 아마존(Amazon.com)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마존센터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고 풀필먼트(Fulfillment by Amazon, FBA) 센터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FBA 방식을 도입하였고,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도 아마존의 FBA와 유사한 형태의 알리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전자상거래 결제와 시스템 플랫폼 제공이라는 기존 사업영역에서 물류와 배송의 영역까지 통합함으로써 빠르고 저렴한 배송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나. RCEP과 국제물류센터(GDC) 활성화

2022년도에 발효된 RCEP은 참여국 간에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참여한 한·ASEAN FTA에서도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허용되었으나, RCEP에서는 더 세밀하고 실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ASEAN FTA의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가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당사국 수입자와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자가 동일해야 한다. 반면 RCEP에서는 당사국 수입자와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지 않음으로써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표 IV-1〉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교: 한·ASEAN FTA vs. RC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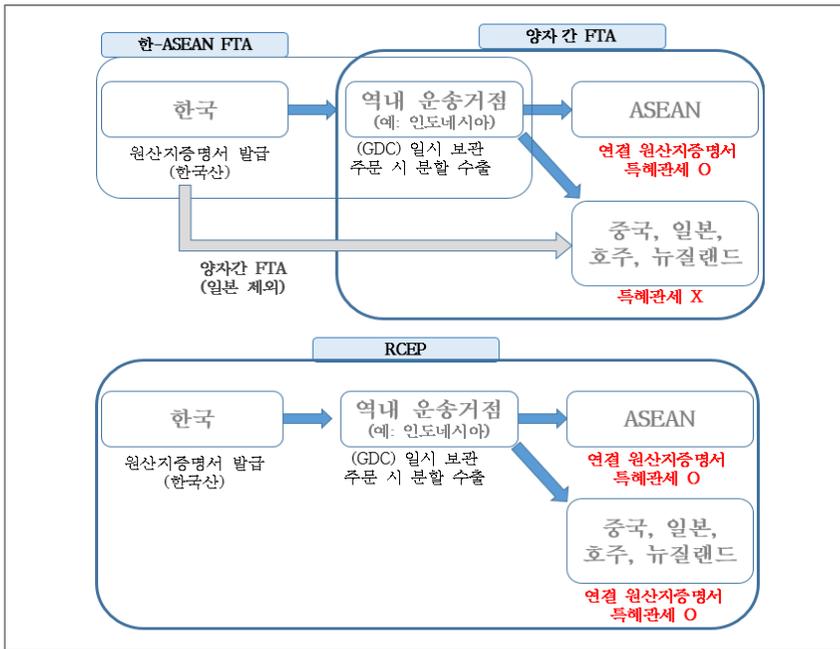
한·ASEAN FTA
<p>제7조</p> <p>2. 중간 경우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p> <p>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p> <p>나. 중간 경우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우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p> <p>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p>
RCEP
<p>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p> <p>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우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p> <p>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p> <p>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우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p> <p>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p> <p>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p> <p>2. 제3.24조(검증)에 언급된 검증 절차는 연결 원산지 증명에도 적용된다.</p>

자료: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RCEP으로 인해 동일 협정 내 특혜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연결 원산지 증명서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를 활용한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GDC는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 반입하여 고객 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외로 반출하는 물류배송센터로 B/L 단위의 화물을 자유무역지역 내 GDC에 반입한 후, B/L을 해체하여 품목별로 입고, 재고관리, 재포장 및 해외 출고를 진행할 수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 서비스이다. 이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혹은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역내 거점 GDC로 운송한 후, 역내국의 주문 및 납품 요청이 들어오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하고 해당 국가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수출할 때에도 RCEP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한·ASEAN FTA의 연결 원산지증명서 적용 범위가 한국과 ASEAN 10개국으로 제한되었던 것에 비해,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ASEAN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괄하며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도 쉬워졌다는 점에서 GDC를 활용한 역내 교역이 주목받고 있다.

[그림 IV-4] 역내 운송거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자료: 저자 작성

특히 역내 GDC를 활용하는 방식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운송비용 및 시간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B2C 거래 방식에 적합한 방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UPU의 Group 2로 분류된 국가로 Group 3으로 분류된 중국과 더 낮은 Group으로 분류된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국제우편 요금이 비싸며, 이는 전자상거래 교역에 비교열위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량으로 역내 GDC에 상품을 보내고, 한국에서 받은 주문을 거점 지역의 GDC를 통해 발송하는 방식은 운송 거리 단축과 UPU의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운송 거점 국가의 혜택을 활용함에 따른 시간 및 운송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면세혜택을 넘어서는 (한국의 경우 150달러)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운송거점 국가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입국에서의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는 방안은 변화하는 국경 간 상품 교역방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에 참여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다. 국내 국제물류센터(GDC) 운용 현황과 한계

1) 국내 국제물류센터(GDC) 현황

우리나라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조성을 목표로 국제물류센터(GDC)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라고 정의하면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고객 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보관·재포장 후 재송하는 물류센터로 정의하고 있다. 관세청은 GDC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국제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가 국내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⁷⁴⁾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GDC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자격을 수출입

74) 관세청(2022), p. 24.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함께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GDC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또한 반입가능 물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할 물품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과 통관 전 주문 취소된 특송·우편 물품을 추가했다.

〈표 IV-2〉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규제혁신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개선
운영자격 완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취급대상물품 확대	해외판매자에게 판매할 물품	해외판매자에게 판매할 물품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
	통관 전 주문 취소 물품 반송·폐기	GDC 반입 후 국내외 재판매 가능
국산제품 수출요건 완화	외국물품과 합포장 후 수출	내국물품만 수출 가능

자료: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 육성」, 보도자료, 2023. 1. 31., p. 2.

2024년 6월 현재 CJ,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6개 업체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⁷⁵⁾ 하지만 CJ 대한통운이 아이허브로부터 전자상거래 물류를 위탁받아 GDC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대규모로 GDC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DC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었지만, 국내 GDC가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GDC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은 허용되지 않고 해외직구 물품의 역외수출(해외역직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GDC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통관되는데, 단지 통관하는 방식에 따라 과·면세가 나뉘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CJ 대한통운도 현재 아이허브로부터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만 취급하고 있다.

75) 씨제이대한통운(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한진, (주)에이씨티앤코이물류, 큐익스프레스(주), (주)스페이스시스원 등이 있다.

2) 국내 국제물류센터(GDC)의 한계

현재 국제물류센터(GDC)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제물류센터(GDC)를 통한 해외직구는 국내 반입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만약 GDC에서 해외직구 거래(B2C)를 허용할 경우, 해외직구 업체들은 국내에서 주문이 많은 해외직구 물품을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GDC에 미리 반입한 이후에 국내 소비자가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된다. 이는 현재 일반 수입업자도 해외 물품을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국내로 수입하고 국내 소비자가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심지어 배송 소요 시간도 GDC와 국내물류창고에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배송시간도 동일해진다. 단지 차이점은 해외직구는 면세되고, 일반 수입품은 과세된다는 것이다. 추가로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수입업자는 수입요건확인을 필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해외직구는 요건면제이기에 이 비용도 없다. 그래서 현재 GDC를 통한 해외직구는 국내 반입이 불허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입업자는 현재도 해외직구와 비교하여 제도적으로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수입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반면, 소액·소량 해외직구는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 시간 및 비용, 반품의 어려움 및 시간 지체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GDC에서 B2C 거래를 허용하면 해외직구 물품도 대량으로 컨테이너를 통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수입 물품의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마저도 없어져 일반 수입업자와 국내 사업자는 지금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표 IV-3〉 GDC를 통한 해외직구와 일반수입 비교

구분	해외	해상운임	통관	보세창고	운송			최종
GDC	건강식품	해상운임	무세	GDC 보관	-	-	국내운송	소비자
일반 수입	건강식품	해상운임	관세 부가가치세 요건확인	창고 보관	국내운송	창고보관	국내운송	소비자
비교	동일	동일	GDC 저렴	동일	GDC 저렴	GDC 저렴	동일	GDC 저렴

자료: 저자 작성

V. 해외직구 관련 관세제도 발전 방향

1. 해외직구 과세제도 개편

가. 과세 필요성

1) 해외직구 가격과 국내 가격 차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한 이유는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2016, 2018)의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설문에 의하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이유(복수응답) 중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78.1~80.9%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2018)의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설문에서 “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보다 얼마나 저렴한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 품목 평균 약 27.7% 저렴하다고 응답하였다.

김숙경(2022)은 해외직구 가격과 정식 수입품 가격 차이를 조사하였다. 해외직구가 빈번한 8개 품목을 중심으로 동일 브랜드의 동일 모델 170개에 대해 해외직구 제품과 정식 수입품의 가격을 직접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외직구 제품의 가격이 정식 수입품의 가격보다 평균 약 23.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⁷⁶⁾ 앞서 한국소비자원(2018)의 설문 응답에서 평균 약 27.7% 저렴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한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격 차이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와 수입요건확인 비용 면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수입업자 또는 국내 사업자의 (독과점) 이윤, 유통 이윤 등도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 세율이지만, 관세는 품목별

76) 다만 170개 제품 중에서 해외직구 가격이 정식 수입품보다 낮은 제품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고, 해외직구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격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이 약 1.5%이고, 해외직구로 많이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의류, 화장품 등의 관세율 수준이 이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관세율 2%를 가정할 경우, 해외직구가 면세로 인해 약 12%p 정도 저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직구 가격과 정식 수입품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가격 차이가 44.2%로 가장 크다. 이는 과세 면제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에는 수입요건확인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해외직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해외직구 가격과 정식 수입품 가격 차이를 전체 평균 가격 차이인 23.3%에 비해 20.9%p나 추가로 더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가장 많이 반입되는 품목인데, 이런 가격 차이가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반입되게 유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표 V-1〉 해외직구 제품과 정식 수입품의 가격 차이

(단위: %)

품목	가격 차이
건강기능식품	-44.2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33.3
가전제품(전자, 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포함)	-24.7
신발	-23.3
화장품	-23.6
가방(지갑 포함)	-30.3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23.4
아동·유아용품	-7.4
품목 전체 평균	-23.3

주: 품목 전체의 평균 가격 차이는 해외직구 총구입액 대비 품목별 구입액 비율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
 자료: 김숙경(2022), p. 63, 〈표 7〉

2) 부가가치세 과세 불가피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제도 운영 취지와 현재의 해외직구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에 따른

과세 환경 변화,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세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기존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운영 취지는 국경을 넘는 개인 거래가 희소할 때 실행된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소액이라는 명분만으로 새로운 개념의 해외직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시는 전산화 미비로 인한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면세를 적용하였지만, 현재는 모든 자료가 소액이든 고액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디지털로 세관에 전송 가능하므로 과세에 따른 행정비용이 이전보다 작아졌다. 따라서 현재 해외직구라는 개인 소액무역이 자리를 잡고 디지털화된 통관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U에서도 밝혔듯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의 데이터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현재의 디지털 통관환경에서, 도입 당시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였던 과도한 행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면세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내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어 국내 소매업자는 불공정한 시장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소액면세 한도가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로 환율 1,400원을 가정했을 때 약 21만원(28만원)이다. 국내 소매업자는 아무리 적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20만원이 넘는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국내 소매업자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소매업자를 포함한 국내 사업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품질,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등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면세 차이로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관세 과세 필요성

이와 함께 관세에 적용되는 소액면세 한도를 철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직구 물품 중 수입요건확인인 필요한 물품에 대해 개인으로 하여금 수입요건확인을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

여, 요건확인 비용 정도를 관세로 부담하게 하여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국내 사업자의 공정성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품의 요건확인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요건확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수입이 아닌, 이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해외직구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무력화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도 과세 면제와 요건확인 면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수입이 아닌 해외직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직구로 많이 반입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10%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 과세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관세를 부과하여 요건확인 비용만큼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위해 규제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U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17%의 높은 간이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부과 방식은 EU 방식처럼 간이세율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직구 악용 가능성이 작고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등을 고려해서 간이세율이 0%인 품목군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직구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저가신고, 분할 매수, 타인 명의도용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직구 소액면세한도인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수가 전체의 해외직구 건수의 약 98%인데, 이 중에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관세청에 의하면 2023년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통해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62억원)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⁷⁷⁾ 2024년 9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한 밀수입 등의 관세사범은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⁷⁸⁾

77) 관세청,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 적발」, 보도자료, 2023. 12. 28.

78)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 2024. 10. 21.

〈표 V-2〉 최근 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 단속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관세사범	지재권사범	마약사범	보건사범	전체
2021	175	20	1	85	281
2022	482	24	1	91	598
2023	499	533	1	116	1,149
2024(1~9월)	530	19	1	58	608

주: 보건사범은 약사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사범임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24. 10. 21)를 이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부수적으로 해외직구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위법한 해외직구 재판 매도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자가사용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중고시장 등에 해외직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앞서 보았듯이,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 등 이런 방법을 악용하는 사업자도 있다.

나. 과세에 따른 납세협력 유도

호주는 국외 사업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GST 등록기준(7만 5천호주 달러)을 적용하면서, 대신 간소화된 GST 등록제도를 적용하였다. EU는 해외 공급업체가 EU 내 중개자를 임명해서 이 중개자가 과세 대상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 우리는 2024년도 세법개정 안에서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제안하였다. 등록대상은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①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② 국내외 통신판매 중개업자 ③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등이다.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는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대상도 이들 등록대상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호주의 등록제도는 예상보다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해외 공급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수의 해외 공급자가 호주 GST 등록하였고, 특히 연간 매출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⁷⁹⁾이 전체 등록 기업의 약 60%를 차지하면서 호주로 수출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자들의 자발적인 GST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소매물품에 대한 GST 부과를 위한 공급업체의 부담이 예상했던 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공급자가 호주 GST 등록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는 호주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있었다. 우선 간소화된 GST 등록제도 설계의 목적이 중소기업과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국가/기업에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다. 호주는 해외 공급업체에 새로운 제도를 알리기 위해 기업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였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중국을 위해 중국어 사이트, 전담 지정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호주 국세청의 노력은 우리 과세 당국에서도 참고할 사항이다. 그리고 동시에 대부분 주요 해외 공급업체들도 자사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제도 준수에 협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무엇보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과 호주 국경보호청(Australian Border Force)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사업자의 소매 매출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해외 공급자의 경우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GST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세관과 국세청의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 준수에 다수의 업체가 협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79) 호주에서 연간 매출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한다.

2. 과세 관련 고려 사항

가. 과세를 위한 제도 마련

해외직구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역과 상이한 해외직구라는 개인 소액무역에 맞는 관세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정재호·김한성(2019)에서 새로운 관세제도를 제시하였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해외직구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함께 해외직구의 범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새롭게 등장한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절차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법에서는 기업형 대용량 수입품에 적합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해외직구는 이러한 기업형 대용량 수입이 아닌 개인의 소액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잘 반영한 신고 서식, 환급, 세액심사, 가산세, 벌칙 등 기존의 모든 관세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관련 판매자, 구매자의 거래 정보 및 물품 관련 정보 확보 등을 통해 위협관리를 시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거래 정보 확보는 미국, 중국, EU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며 거래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아닌 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1억건 이상인 소액 거래를 세관에서 통관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 통관 전산화도 필수적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해외직구 물품의 거래정보 확보와 해외직구 업체들의 등록을 유도하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⁸⁰⁾ 개정 내용은 크게,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거래정보 제공, 그리고 효율적인 통관제도 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청대상을 명확화하였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⁸¹⁾은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⁸²⁾ 둘째, 관세청 등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입

80)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4. 7. 25.(1), p. 57.

81) 국내의 통신판매업자, 국내의 통신판매중개업자, 회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물품의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 수신인 등의 거래정보를 수입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⁸³⁾ 셋째, 관세청은 이렇게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수출입신고 및 선별검사 등에 활용하여 간소화된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과 방법, 적용범위를 구체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다.⁸⁴⁾ 이에 따라 현재 탁송품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직구 물품을 X-ray로 검사했던 기존의 절차에서, 고위험물품 집중검사 등 선별검사가 가능해짐으로 인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⁸⁵⁾

나. 연간 한도 설정 및 소액면세한도 축소의 문제점

1) 연간 한도 설정의 문제점

기존의 소액면세한도를 유지하면서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소액면세한도제도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가사용 범위를 벗어난 해외직구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현재의 소액면세한도제도에서도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개별 해외직구에 대해서만 면세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 목적의 해외직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여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연간 면세한도제도는 이미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 목적의 해외직구에 과세하는 것이기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도 쉽다.

그러나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할 경우, 전체 해외직구 중에서 매우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⁸⁶⁾ 대부분의 해외직구는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되어 앞서 언급한 일반수입 및 국내 생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

82)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2), p. 103.

83) 기획재정부(2024. 7. 25.)(2), p. 104.

84) 기획재정부(2024. 7. 25.)(2), p. 102.

85) 기획재정부(2024. 7. 25.)(1), p. 57.

86) 관세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99% 이상의 해외직구가 중국이 설정한 연간면세한도 이내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렵다. 그리고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할 경우 가족 명의 등의 과세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세 관청에서 면세한도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부담이 많이 증가한다. 연간 면세한도를 초과한 납세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해야 하고, 만약 반품, 교환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과세 관청이 다 관리해야 해서, 연간 면세한도 관리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2) 소액면세한도 축소의 문제점

이런 한계를 고려해서 소액면세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현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인 소액면세한도를 예를 들어 100달러 혹은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해외직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0년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소액면세한도는 약 50달러 이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친인척 선물이라면 50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⁸⁷⁾

소액면세한도를 100달러 혹은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실시할 경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100달러 혹은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경우의 장점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처럼 소액면세한도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와 일반수입품 그리고 국내 생산품 간의 과세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소액면세한도 이상의 물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액면세한도를 설정하는 순간 그 이하의 물품에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은 소액면세한도 수준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추가로 어떤 수준의 소액면세한도를 설정하건 상관없이 소액면세한도를 설정하는 순간, 저가 신고, 분할 신고 등의 편법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른 세관 행정비용도 소액면세한도를 인하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 역시 소액면세한도 수준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87) 예를 들어 영국 36파운드(당시 54달러), 독일 22유로(당시 28달러), 캐나다 60캐나다달러(당시 59달러), 호주 50호주달러(당시 45달러) 등이다.

셋째, 한미 FTA에 의해 설정된 200달러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개정이 필수적이다. FTA가 양국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에, 소액면세한도를 200달러에서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그만큼의 혜택도 제공해야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문제다. 미국발 해외직구는 여전히 200달러이면서 그 외 지역에 대해서 100달러 혹은 그 이하로 낮출 경우, 통상마찰도 불가피할 수 있다.

다. 한미 FTA 규정 및 규정 개정 문제

한미 FTA 협정문 제7장은 양국 간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한미 FTA 협정문 제7.7조에서는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에 대해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V-3〉 한미 FTA 협정 제7.7조(특송화물)

국문	<p>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p> <p>가.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한다.</p> <p>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p> <p>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해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p> <p>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p> <p>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p> <p>바.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p> <p>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¹⁾</p>
영문	<p>g. under normal circumstances, provide that no customs duties or taxes will be assessed on, nor will formal entry documents be required for, express shipments valued at 200 U.S. dollars or less.¹⁾</p>

주: 1) 사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g), a Party may require express shipments to be accompanied by an airway bill or other bill of lading.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assess customs duties or taxes, and may require formal entry documents, for restricted goods.

자료: 「한미 FTA」 협정문,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kor/21-07CustomsAdmin.pdf,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eng/14-07CustomsAdmin.pdf, 검색일자: 2024. 8. 28.

미국은 해외직구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현재 한미 FTA에서는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 유력하다.

우리 입장에서 첫째, FTA라는 협정을 인정하고 한미 FTA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에만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한미 FTA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합법적인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일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EU, 중국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명분이 크지 않다. 기존에 체결한 한EU FTA, 한중 FTA에 한미 FTA처럼 추가 면세조항을 넣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다른 문제점 해소를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한미 FTA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외직구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한다.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의 혜택을 미국에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해득실을 비교해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⁸⁸⁾

라. 과세에 따른 세수 추정

만약 해외직구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현재 면세되는 해외직구 금액은 약 43억달러(5.6조원, 환율 1,305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이기에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5천억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EU는 2028년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저가 신고, 분할 신고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역시 면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저가 신고, 분할 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관세부과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EU가 제시한 품목군별 간이세율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물품 구매 금액이 제시되기

88) 참고로 미국-호주 FTA 협정문 특송화물 관련 규정에는 소액면세 관련 조항은 없어서,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는 없었다.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10% 단일 세율인 부가가치세와 달리 관세는 품목별 관세율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관세 세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이 약 1.5%이고, 해외직구로 많이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의류, 화장품 등의 관세율 수준이 이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관세율 2%를 적용할 경우, 단순히 해외직구 금액 약 43억달러(5.6조원, 환율 1,305원)에 관세율 2%를 부과한다면 관세 세수는 약 1천억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추가로 한미 FTA로 인해 미국발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미국으로부터 면세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금액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통계치가 없다. 전체 해외직구 금액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 수준이어서, 이를 생각해 어림으로 계산하면 약 1,3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발 해외직구에 지금처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해외직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3,700억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마. 소비자과 사업자 후생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을 꼽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직구 가격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는 김숙경(2022)이 있다. 김숙경(2022)은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얻는 소비자잉여가 2021년에 약 5,363억원이라고 추정하였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구매하면서 그만큼 국내 생산품과 일반 수입품의 수요는 감소해서 국내 판매자, 국내 생산자, 수입업자 등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해외직구 물품은 다른 국내 생산품이나 일반수입품과 달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요건확인 비용도 면제되기 때문에, 모든 물품에 공정하게 과세되는 상황에 비해 소비자 후생은 추가로 더 증가하고, 반대로 국내 사업자의 후생은 추가로 더 감소하게 된다.

과세 면제와 요건확인 비용 면제로 인한 추가적인 후생 변화는 국내 판매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불공정한 시장환경에 기인하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이를 시정하면 추가적인 후생 변화는 없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후생 변화가 없어지더라도 해외직구로 인해 국내 소비자 후생은 여전히 증가하고 국내 판매자와 국내 생산자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로 인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순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기 어렵다.⁸⁹⁾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순효과는 알 수 없지만, 해외 수입품이 국내로 수입되면서 국내 생산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해외직구 제품도 역시 국내 생산품의 가격과 일반 수입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호 경쟁은 국내 사업자의 품질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유도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상호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과세 면제와 요건확인 비용 면제는 시정하여 국내 사업자와 해외 공급자 간에 공평하게 경쟁하게 제공하고 그 이상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국내 생산자와 소매업자도 생산성 및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3.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GDC 발전 방향

가. 국제 통상환경 변화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체제를 이끌었던 WTO가 현재 협상력 부재와

89) 해외직구에 의한 소비자 후생은 해외직구의 저렴한 가격, 다양한 해외직구 물품 등에 의한 후생 증가 효과와 낮은 품질, 검증(요건확인)이 안 된 물품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으로 인한 후생 감소 효과가 공존한다. 참고로 김숙경(2022)은 해외직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얻는 소비자 잉여를 추정하였다. 생산자의 후생은 개별 산업별로 또는 더 세분하여 개별 품목별로 해외직구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는데,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생산자 후생은 파악하기 어렵다.

WTO 주요 기능 상실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WTO 체제의 대표적인 무역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심화는 향후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입지와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는 가운데, 기존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혹은 역내 다자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거대 통상협정은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전쟁, 신냉전의 확산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신통상규범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국제통상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RCEP 등 역내 거대 통상협정에서는 역내 누적 원산지룰 인정하면서 새로운 역내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내 누적 원산지규정은 새로운 교역을 창출하면서 역내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과 달리 해외직구는 수입국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물류시스템을 통한 배송 방식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배송 방식으로 인해 효율적인 B2C 거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시스템과 역내 거대 통상협정의 연결 원산지증명을 활용하여 GDC를 이용한 교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내 GDC를 활용하는 방식은 국경 간 해외직구 거래의 운송비용 및 시간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B2C 거래 방식인 해외직구에 적합한 방안으로 꼽힌다.

나. GDC 활용과 발전 방향

해외직구 등에 적합한 방안으로 꼽히는 GDC의 활용은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해외직구의 배송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상품 공동보관, 재고관리, 포장(합포장, 재포장), 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 및 국내

배송까지 end to end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국내 물류업체들도 해외직구의 운송비용 절감 및 배송 시간 단축을 위해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 등에 GDC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GDC가 운용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세 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운용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 문제로 인해 GDC에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해외직구 물품의 해외 수출은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을 해외 수출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직구 시장이 큰 중국, 일본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해외 판매자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외직구 시장이 우리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이나, 해외 판매자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과 같은 대규모 해외직구 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GDC에 반입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이 되지 않으면, 굳이 국내 GDC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⁹⁰⁾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GDC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GDC의 국내 활용 방안은 국내 소비자 입장과 함께 국내 사업자 입장,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 GDC에서 B2C 거래를 허용하여 GDC를 통해 해외직구를 받게 되면, 운송비 절감에 따른 가격 인하, 배송 시간 단축 등의 효용 증가가 발생한다. 해외직구 물품이 주문 후 개별적으로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앞서 사전에 대량으로 GDC에 반입된 이후, 주문 후 재포장되어 국내로 배송되기 때문에 배송 비용이 감소하고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국내 사업자, 판매자 그리고 일반 수입업자 입장에서 GDC에서 B2C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더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류산업 입장에서 GDC에서 B2C 거래를 허용하면, GDC

90) 업계 실무자에 의하면, 우리보다 일본의 해외직구 시장이 크고,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국에 GDC를 둘 수 있지만, 중국은 관련 규제의 개편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물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를 선호한다고 한다.

에 빈입된 수입 화물은 운송, 하역, 창고보관, 합포장 및 재포장, 재고관리 등의 작업을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국내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운송, 하역, 창고보관, 재고관리, 포장(합포장, 재포장) 등의 수요 증가로 물류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나 우리나라 물류업체의 해외 GDC 활용 사례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소비자 및 사업자 입장과 함께 GDC의 역할은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 등을 포함하여 더 큰 범위에서 논의하여 GDC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⁹¹⁾ GDC의 활용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생산자,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업체 등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일부분인 해외직구로 한정해서 GDC의 역할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 등을 활용할 경우, 양자 간 FTA와 달리 폭넓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활용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GDC를 통한 수출(해외직구)이 가능해져서 해외 진출에 따른 교역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생산 증가, 물류 처리, 항공 배송 등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GDC 운용의 중요한 걸림돌은 과세 문제이다. 따라서 GDC는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제도 등을 통한 폭넓은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국내 생산 증가, 물류 처리, 항공 배송 등을 통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외직구에 과세하여 GDC를 제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91) 업계 실무자에 의하면 GDC를 운용하는 업체 입장에서 GDC에서 해외직구를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해외직구 통관 수수료, 추가로 국내 택배 배송에 따른 이득 정도로 큰 이득은 없다고 한다. 이보다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로 해외직구를 보낼 때는 창고보관, 합포장, 재포장, 재고관리 등의 작업과 함께 항공운송 등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가 기존의 기업형 무역과 다른 새로운 무역형태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기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해외직구에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그리고 역내 거대 통상협정 등장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직구와 연관성이 높은 국제물류센터(GDC)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하였다. 해외직구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국내 판매자에게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지만, 해외 공급자로부터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처럼 국내 판매자와 해외 공급자 간에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가피하다. 국내 판매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품질,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등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면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구가 확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WCO 등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호주, EU, 뉴질랜드, 중국 등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EU는 2028년부터 관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수입품의 요건확인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요건확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수입이 아닌,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해외직구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무력화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에게 요건확인을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요건확인 비용 정도를 관세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위해 규제 무력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간이세율제도를 EU처럼 활용하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관세부과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예상을 넘는 GST 징수 실적과 자발적으로 GST 등록을 한 다수의 해외 공급자 등의 결과는 호주 정부의 간소화된 제도 설계, 중국 등 소규모 해외 공급자에 특화된 제도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세관과 국세청의 정보 공유가 큰 역할을 하였다. 해외직구는 소액이건 거액이건 금액과 상관없이 디지털로 세관에 과세 정보가 전송되기에 이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디지털 세정을 통해 작은 행정비용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효율적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내 GDC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물류시스템은 해외직구 거래의 운송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기에 해외직구 거래 방식에 적합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범위에서 GDC는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제도 등을 통한 폭넓은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한 해외 수출(해외역직구)이 가능하며, 국내 생산 증가, 물류 처리, 항공 배송 등을 통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GDC 운용의 중요한 걸림돌은 과세 문제인데, GDC 운용을 위해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세함으로써 GDC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면서 국내 생산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해외직구 제품도 역시 국내 생산품과 일반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호 경쟁은 국내 사업자의 품질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유도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상호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과세 면제와 요건확인 비용 면제는 시정하여 공평하게 경쟁할 환경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차이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국내 생산자와 판매자도 생산성 및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문성·송백훈·김한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미래성장 연구』, 제6권 제1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0, pp. 141~162.
- 관세청,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해외 688억원 적발」, 보도자료, 2023. 12. 28.
- _____, 「규제혁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 육성」, 보도자료, 2023. 1. 31.
- _____,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 2024. 10. 21.
- _____,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22.
- 고비즈코리아, 「숫자로 읽는 2024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2024 Gobiz Global E-commerce Trend 웹진 GET』, Vol. 4, 2024, p. 9.(<https://kr.gobizkorea.com/get/2024/02/>, 검색일자: 2024. 6. 13.).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4. 7. 25.(1)
- _____,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2)
- 김상만, 「관세법상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관련 최근 판결의 주요 쟁점 분석」, 『관세학회지』, 관세학회, 제23권 제3호, 2022, pp. 3~18.
- 김숙경,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분석」,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년 11월호, 산업연구원, 2022, pp. 55~65.
- 김충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8권 제1호, 2017, pp. 3~17.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통상 국제규범 선점 경쟁의 본격화」, 『통하는 세상 통상』, Vol. 135, 2023, pp. 6~7.

- _____, 『디지털 통상 통계 참고 자료집』, 2023.
- 이홍숙, 「중국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한국무역상무연구학회, 2020. pp. 189~216.
- _____, 「중국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보세구역·FTZ에서의 B2C 수입 허용 요구 관련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회관 윤상현 의원실, 2022. 12. 20.
- 정재호·김한성,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9.
- 조원길, 「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23권 제3호, 2022, pp. 83~104.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시장조사 18-16, 2018.
- _____, 『해외직구 이용 및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조사보고서, 2016. 6.

〈외국 문헌〉

- Amazon, *Quarterly results 2023 Q4 Earnings*, 2024.
- _____, *Quarterly results 2022 Q4 Earnings*, 2023.
- _____, *Quarterly results 2021 Q4 Earnings*, 2022.
- Alibaba, *FY 2024 Annual Report*, 2024.
- _____, *FY 2023 Annual Report*, 2023.
- _____, *FY 2022 Annual Report*, 2022.
- _____, *FY 2021 Annual Report*, 2021.
- Australian Government Board of Taxation, *Application of GST to Cross-Border Transactions*, 2010.
- _____, *Review of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2021.
-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Collection Models for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2017.
- B. Basalisco, J. Wahl and H. Okholm, *E-Commerce Imports into Europe: VAT and Customs Treatment*, Copenhagen Economics, 2016.

Chad P. Brown, *The US-China Trade War and Phase One Agreement*, Working Paper 21-1,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1.

CBP, “Test Concerning Entry of Section 321 Low-Valued Shipments Through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 2019. 8. 13.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8/13/2019-17243/test-concerning-entry-of-section-321-low-valued-shipments-through-automated-commercial-environment>, 검색일자: 2023. 6. 12.).

_____, “CBP Enhances Accountability in E-Commerce through Ruling on Duty Exemptions for Low Value Shipments,” Media Release, 2020. 8. 3.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enhances-accountability-e-commerce-through-ruling-duty>, 검색일자: 2024. 10. 15.).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_____,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an action plan on VAT: Toward a Single EU VAT Area-Time to Decide,” 2016.

EU TAXUD, *Explanatory Notes on VAT e-commerce Rules*, 2020.

OECD/G20,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Final Report*, 2015.

UNCTAD, *Business e-commerce sales and the role of online platforms*, 2024.

〈웹사이트〉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

cntntsId=819, 검색일자: 2023 .6. 9.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5&tblId=DT_145010_009&vw_cd=MT_ZTITLE&list_id=F_9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자: 2024. 10. 2.

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4. 10. 2.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https://sell.amazon.co.kr/grow/fulfillment-by-amazon>, 검색일자: 2024. 6. 21.

전성훈, 「알리바바, 한국에 3년간 1조 5천억원 투자…연내 물류센터 건립」, 『연합뉴스』, 2024. 3. 14.,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3163300030>, 검색일자: 2024. 6. 21.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TRASS, <https://www.bandtrass.or.kr/theme/ecommerce.do?command=THE005View&viewCode=THE00501>, 검색일자: 2024. 5. 16.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Cainiao, <https://www.cainiao.com/en/global-express.html?spm=a2d524.28499003.header.6.8cbb9afeql6T8l>, 검색일자: 2024. 6. 21.

eMarketer, <https://www.emarketer.com/chart/265660/retail-ecommerce-sales-worldwide-2021-2027-trillions-change-of-total-retail-sales>, 검색일자: 2024. 6. 13.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6796/global-cross-border-ecommerce-market-value/>, 검색일자: 2024. 6. 19.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5, 검색일자: 2024. 5. 16.

WTO, <http://rtais.wto.org/UI/Charts.aspx>, 검색일자: 2024. 4. 30.

부 록

〈부표〉 EU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간이세율표 개정안

Bucket A: 증가세 0%

류	품명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26	광·슬레그·회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49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도면
80	주석과 그 제품
97	예술품·수집품·골동품

Bucket B: 증가세 5%

류	품명
05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시멘트
27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43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5	코르크와 그 제품
46	짐·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세공물
66	산류·지방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7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8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71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3	철강의 제품
75	니켈과 그 제품
78	납과 그 제품

〈부표〉의 계속

Bucket B: 증가세 5%

류	품명
79	아연과 그 제품
82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3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6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	시계와 그 부분품
92	약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4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5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Bucket C: 증가세 8%

류	품명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50	건

〈부표〉의 계속

Bucket C: 증가세 8%

류	품명
51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2	면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6	워딩 · 펠트 ·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밧줄 · 로프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8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59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9	도자제품
72	철강
74	구리와 그 제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81	그 밖의 비금속, 서멧, 이들의 제품
88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96	잡품

Bucket D: 증가세 12%

류	품명
6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12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 의약용 식물, 짐과 사료용 식물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냄마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부속품

〈부표〉의 계속

Bucket E: 증가세 17%

류	품명
01	살아있는 동물
02	육과 식용 설육
03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04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7	식용의 채소 · 뿌리 · 괴경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 멜론의 껍질
09	커피 · 차 · 마테 ·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3	락, 검 · 수지 ·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5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왁스
16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19	곡물 · 고운 가루 · 전분 ·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채소 · 과실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1	각종 조제 식료품
22	음료 · 주류 · 식초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64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70	유리와 유리제품

자료: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ANNEX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정재호 · 김한성

본 연구는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해외직구에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그리고 해외직구와 연관성이 높은 국제물류센터(GDC)의 발전 방향을 분석하였다.

해외직구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제도로 인해 국내 판매자와 해외 공급자의 불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인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WCO 등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호주, EU, 뉴질랜드, 중국 등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EU에서는 2028년부터 관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물품의 요건확인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요건확인이 필요한 일반수입이 아닌,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해외직구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무력화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에게 수입요건 확인을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고려하여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요건확인 비용 정도를 관세로 부담하게 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규제 무력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GDC는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제도 등을 통한 폭넓은 특혜 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국내 생산 증가, 물류 처리, 항공 배송 등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외직구에 과세하여 GDC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Study on the Customs System related to Cross Border E-Commerce

Jaeho Cheung and HanSung Kim

This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implementing the de minimis exemption to cross-border e-commerce, the policy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addressing these issues, and the proliferation of Global Distribution Centers (GDCs) closely tied to cross-border e-commerce.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cross-border e-commerce has created an unfair market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sellers and foreign suppliers, prompting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VAT) on cross-border e-commerce. Countries such as Australia, the EU, New Zealand, and China have already implemented VAT, with the EU planning to introduce customs duties in 2028.

A regulation paradox arises as stricter import regulation to ensure public safety have unintentionally increased the shift to cross-border e-commerce, which is exempt from such requirements, thereby undermining regulatory effectiveness. To prevent the erosion of regulatory efficacy and protect consumer safety, it is necessary to impose an equivalent compliance verification cost as a customs duty on goods subject to import requirements.

Lastly, GDCs can utilize preferences tariff treatment under frameworks like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including

cumulative rules of origin. Taxing cross-border e-commerce would facilitate optimal utilization of GDC, boosting domestic production, logistics efficiency, and air freight capabilities.

■ 저자약력

정재호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성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
현,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재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2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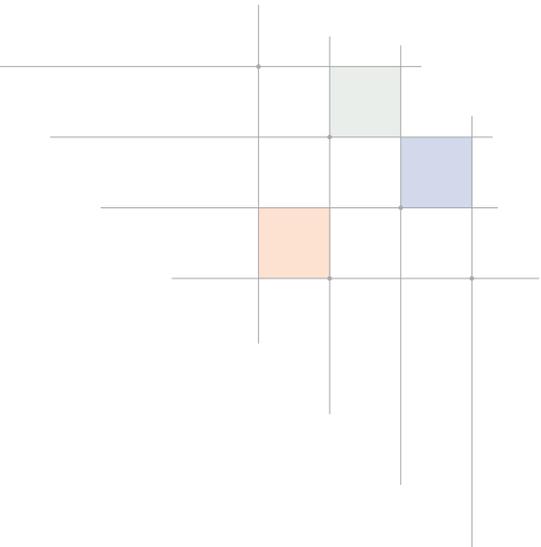
연구보고서 24-02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발행	행	2024년 12월 31일
저자	자	정재호 · 김한성
발행인	인	이영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t.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16,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일지사
I S B N		979-11-6655-311-0 93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값 16000 원

93320

9 791166 553110

ISBN 979-11-6655-311-0